영유아는 안전하게! 보육교직원은 행복하게!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보육현장 사례중심**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교직원 대상 **국외연수** 실시
- **공모전** 및 **뉴스레터 운영**으로 **영유아 안전 환경 조성**
- 소방, 교통 등 **맞춤형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수행**을 통한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 영유아,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정기가입안내

매년 2월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정기 가입기간」입니다.
공제상품 가입을 통해 새 학기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상품 총 14종

영유아(방과후) 생명 신체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집기/화재배상특약), 풍수해특약, 보증 ['21년도 신규상품] 보육동반자 책임담보특약(대위권 포기특약), 재난사고위로금특약(화재 건물, 화재 집기, 풍수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대표번호 : 1600-06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7층
www.csia.or.kr

비매품/무료
13370
9 791185 610580
ISBN 979-11-85610-58-0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Contents

I 안전사고의 이해 08

1.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 ····· 08
2. 어린이집 영유아 주요사고 세부분석 ····· 10

참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요 안전사고 ····· 20

II 관련법령 및 정책 24

1. 안전관련 법규 ····· 24
2. 안전관련 지침 ····· 30
3.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 32
4. 어린이집 평가제 ····· 35

III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38

1. 어린이집 안전관리 기본방향 ····· 38
2.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방안 ····· 51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리절차 ····· 66

참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내용으로 알아보는 공제용어 ····· 69

IV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74

1.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돌아보기 ····· 74
2. 사례공유-이야기 나누기 ····· 79

V 어린이집과 가정 안전 연계 82

1.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 필요성 ····· 82
2. 보호자·어린이집 간의 협력 내용 ····· 83
3. 안전한 가정 환경 ····· 88

부록 98

1.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 ····· 98
2.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 99
3. 미세먼지·오존 / 실내공기질 ····· 109
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및 보장내용 ····· 112

참고문헌 115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본 책의 구성

들어가기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주요 <중략>

▶ 학습 전 들어가기를 통하여 후에 이어질 주요 이론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봄

주요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전제가 될 때,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중략>

▶ 참고 부분에서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알아봄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실외활동, 현장학습 시 사전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하였는가?	

▶ 체크하기 내용을 확인하여 각 어린이집에서의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해봄

ZOOM-IN 원내 자율 교사연수

▶ 안전교육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과 다시 공부해야 할 내용을 다룸

ZOOM-IN 사례보기

▶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관련 이해도를 증진시킴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참고사항]

본 통계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지자체 등의 안전사고 통계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개인 논문, 학회지, 기관자료 등의 통계자료 활용 시
통계 수치 조작을 금하고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I 안전사고의 이해

1.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
2. 어린이집 영유아 주요사고 세부분석

참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요 안전사고

Ⅰ 안전사고의 이해

들어가기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주요사고에 대한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 사고 중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사고의 경우, 교사가 사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가 청구된 통계를 바탕으로 세부분석을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표 Ⅰ-1>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483건에서 2019년 22,802건으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표 Ⅰ-1〉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5년간)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9,483	19,593	20,451	20,649	22,802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2019년도 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의 전체 인원은 1,365,085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 705,867명(51.70%), 여아 659,218명(48.29%)의 분포를 보임. 어린이집 재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만 2세(376,041명, 27.5%)였으며, 다음으로 만 1세(294,242명, 21.6%), 만 3세(240,429명, 17.6%) 순으로 나타남

〈표 Ⅰ-2〉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보육아동	1,365,085	126,216	294,242	376,041	240,429	173,715	148,832	5,610
비율	100	9.2	21.6	27.5	17.6	12.7	10.9	0.4

출처 :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2019년도에 청구된 사고건수는 총 25,977건*이며 그 중 영유아 사고건수는 22,802건임

* 25,977건(2019년): 영유아 22,802건(87.7%), 보육교직원 2,665건(10.3%), 기타(시설, 대물, 제3자) 510건(2%)

〈표 Ⅰ-3〉 연령별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사고건수	22,802	82	2,783	5,503	5,493	3,975	3,014	1,952
비율	100	0.4	12.2	24.1	24.0	17.5	13.2	8.6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비율과 안전사고 현황의 연령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Ⅰ-2> 전체 보육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 2세(376,041명, 27.5%)가 <표 Ⅰ-3> 안전사고 접수 건수(5,503건, 24.1%)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2 어린이집 영유아 주요사고 세부분석

가. 성별 및 연령

2019년도 영유아 청구 사고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가 60.8%(13,873건), 여아가 39.2%(8,929건)로 남아의 사고율이 여아 보다 1.6배 높았으며, 연령별 영유아 청구 사고는 영아 36.7%(8,368건), 유아 54.7%(12,482건)로 유아가 영아보다 1.5배 높게 나타남

〈표 Ⅰ-4〉 성별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년
계		22,802(100)
성별	남	13,873(60.8)
	여	8,929(39.2)

〈표 Ⅰ-5〉 연령별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년
계		22,802(100)
연령별	영아(만 0~2세)	8,368(36.7)
	유아(만 3~5세)	12,482(54.7)
	만 6세 이상	1,952(8.6)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나. 사고 장소

사고 장소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802건의 82.4%는 어린이집 내에서, 17.6%는 어린이집 외 장소에서 발생함

어린이집 내 사고 장소 중 64.3%는 보육실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신체활동 및 대집단 활동을 하는 유희실(강당)(현, 공동놀이실)이 15.1%, 놀이터 및 마당이 9.5%로 나타남. 어린이집 외 사고 장소의 40.2%는 견학장소·공원, 38.7%는 인근 놀이터·운동장 순으로 나타남

〈표 Ⅰ-6〉 장소별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어린이집 내(82.4%)			어린이집 외(17.6%)		
사고장소	건	비율	사고장소	건	비율
소계	18,785	100.0	소계	4,017	100.0
보육실	12,081	64.3	견학장소·공원	1,616	40.2
유희실(강당)	2,842	15.1	인근놀이터·운동장	1,554	38.7
놀이터 및 마당	1,788	9.5	길(등하원 및 이동 중)	391	9.7
복도 및 계단	819	4.4	실내놀이터	376	9.4
화장실	690	3.7	기타*	80	2.0
현관	357	1.9			
식당 및 조리실	129	0.7			
기타	79	0.4			

* 기타 : 장소불명확 등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다. 사고 당시 활동

사고 당시 활동 내용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실내 자유놀이(41.0%), 현장학습(20.4%) 시간이 전체의 61.4%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정리정돈·전이(8.0%), 식사·간식(6.9%), (대소)집단 활동(6.6%) 순으로 나타남

〈표 Ⅰ-7〉 활동 내용별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발생 건	비율
계	22,802	100
실내 자유놀이	9,343	41.0
현장학습	4,653	20.4
정리정돈·전이	1,829	8.0
식사·간식	1,564	6.9
(대소)집단 활동	1,516	6.6
등원 및 귀가	1,236	5.4
화장실(손씻기·양치)가기	1,213	5.3
특별활동	920	4.0
낮잠	490	2.1
기타	38	0.2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영유아의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가 진행되는 실내 자유놀이와 외부로 활동 공간이 확장되는 현장학습의 경우, 다른 활동에 비하여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특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2020)으로 보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변화됨. 이에 자유놀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현장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활동시간이 증가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교직원은 개별 영유아를 더욱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

라. 사고 발생 월

영유아 청구 사고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4월(11.0%), 5월(10.0%), 10월(9.8%) 순으로 나타남. <표 Ⅰ-7> 활동 내용별 영유아 사고 현황 중 현장학습의 사고 건과 월별 영유아 사고 발생 건을 세부 분석해보면 10월(30.8%), 9월(28.2%), 6월(25.6%), 5월(24.4%) 순으로 견학 및 실외활동이 증가하는 월에 사고발생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표 Ⅰ-8〉 월별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월별 발생 건	비율	현장학습 사고 건	비율*
계	22,802	100	4,653	
1월	1,613	7.1	180	11.2
2월	1,179	5.2	115	9.8
3월	1,914	8.4	226	11.8
4월	2,509	11.0	566	22.6
5월	2,272	10.0	554	24.4
6월	1,962	8.6	502	25.6
7월	1,933	8.5	404	20.9
8월	1,532	6.7	267	17.4
9월	1,859	8.2	525	28.2
10월	2,224	9.8	685	30.8
11월	2,153	9.4	432	20.1
12월	1,652	7.2	197	11.9

* 비율 산식: 활동 내용별 월 안전사고 현황(전체) ÷ 현장학습 안전사고 월별 건수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5월~6월, 9월~10월은 견학 및 실외활동이 증가하는 월로 원장은 이 점을 유의하여 교사 안전교육 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함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실외활동, 현장학습 시 사전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하였는가?		
사전답사 시 점검사항		
동선파악	어린이집 출발지점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 영유아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 보육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파악	
	활동 장소, 비상구, 화장실, 휴식장소, 의무실, 인근 병원 등의 위치를 알아둠	
위험요소 확인	이동 경로 및 활동 장소를 파악하면서 위험요소도 함께 살펴봄 (예) 위험요소 : 적재물 (목재 더미, 파손된 부분), 웅덩이, 해로운 곤충 등이 모여있는 곳, 높은 언덕 및 계단, 공사중인 건물 등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 실외활동, 현장학습 전 비상약품을 챙기고 인근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확인하였는가?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로 갖추어야 할 내용물		
비상약품(외용제)	간이 의료기구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생리식염수, 벌레물린데 바르는 연고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체온계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9).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4권)		
▶ 영유아와 차량, 교통안전 등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 영유아의 건강 및 날씨(미세먼지, 폭염, 폭설 등)를 사전에 점검하였는가?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와 구조법 등을 학습하였는가?		
▶ 영유아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는가?		

마. 사고 유형

연령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넘어짐'과 '물체에 부딪힘' 사고 비율이 높았음

〈표 Ⅰ-9〉 사고 유형별 영유아 현황

(단위: 건, %)

사고유형	발생 건(%)			
	영아(0~2세)	유아(3~5세)	6세이상~	계
계	8,368(36.7)	12,482(54.7)	1,952(8.6)	22,802(100)
넘어짐	2,565(30.7)	3,797(30.4)	547(28.0)	6.909(30.3)
물체에 부딪힘	2,109(25.2)	3,122(25.0)	456(23.4)	5,687(24.9)
사람과 부딪힘	255(3.0)	1,090(8.7)	222(11.4)	1,567(6.9)
꼬집음, 할퀴	664(7.9)	488(3.9)	42(2.2)	1,194(5.2)
긁힘	338(4.0)	578(4.6)	89(4.6)	1,005(4.4)
사람에 물림	519(6.2)	200(1.6)	9(0.5)	728(3.2)
당김	310(3.7)	331(2.7)	10(0.5)	651(2.9)
끼임	278(3.3)	312(2.5)	52(2.7)	642(2.8)
찔림	91(1.1)	437(3.5)	110(5.6)	638(2.8)
떨어짐	217(2.6)	291(2.3)	60(3.1)	568(2.5)
미끄러짐	151(1.8)	271(2.2)	45(2.3)	467(2.0)
눌림(압박)	126(1.5)	279(2.2)	50(2.6)	455(2.0)
이물질 삼킴(삽입) 및 흡입	104(1.2)	285(2.3)	53(2.7)	442(1.9)
화상	196(2.3)	189(1.5)	30(1.5)	415(1.8)
베임	76(0.9)	141(1.1)	39(2.0)	256(1.1)
물림-벌레 등	59(0.7)	153(1.2)	24(1.2)	236(1.0)
음식물 섭취	46(0.5)	104(0.8)	23(1.2)	173(0.8)
기타(해당없음 등)	264(3.2)	414(3.3)	91(4.7)	769(3.4)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영아의 경우 '꼬집음, 할퀴', '사람에 물림', '화상' 사고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사고유형	영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꼬집음, 할퀴	• 영아의 경우 탐색과 자기방어가 주원인으로 작용되며 호기심이 많아 손으로 궁금한 것을 탐색하고, 몸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주변의 친구 얼굴과 몸을 향해 반사적으로 힘을 주게 되어 발생
사람에 물림	• 영아들은 의사소통 방법이 언어보다는 행동, 몸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놀이 시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친구의 얼굴이나 팔 등을 힘을 주어 물게 됨
화상	• 뜨거운 온수, 텀블러나 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 글루건, 스팀청소기 등을 만지다가 생긴 화상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에 관련된 사고

유아의 경우 '사람과 부딪힘', '긁힘'의 사고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사고유형	유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사람과 부딪힘	• 유아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신체조절능력 등 신체발달 또한 성인에 미치지 못하므로 또래간에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됨
긁힘	• 교재교구, 책 모서리, 연필 등 긁힘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게 파악됨. 유아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유아에게 발생될 수 있는 긁힘 사고에 대한 인식을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훈련을 통하여 형성

사고유형 대부분이 영유아의 발달상 특성으로 기인한 행동(물림, 넘어짐) 등이 원인이지만, 어린이집 환경적 개선 부분(손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모서리보호대 관리 등)을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는 사고유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보육교직원은 이 점을 인지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ZOOM—IN 원내 자율 교사연수

영유아 사고 원인 중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사고 분석

가. 영유아 사고 원인

원인별 영유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74.1%는 영유아 본인에 의해 발생하였고, 영유아간 활동 및 다툼(15.1%), 시설 설비 하자(7.0%), 보육교직원 부주의(2.4%) 순으로 나타남

〈표 Ⅰ-10〉 원인별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발생 건	비율
계	22,802	100
영유아 부주의	16,887	74.1
영유아간 활동 및 다툼	3,432	15.1
시설 설비 하자	1,597	7.0
보육교직원 부주의	550	2.4
벌레, 동물에게 물림	159	0.7
기타*	177	0.8

* 기타: 원인 미상 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이 중 보육교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550건의 사고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김(27.1%), 화상(21.3%)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표 Ⅰ-11〉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영유아 사고 현황

(단위: 건, %)

보육교직원 부주의	계	넘어짐	물체에 부딪힘	사람과 부딪힘	꼬집음 할퀴	긁힘	당김	끼임	찔림	떨어짐	미끄러짐	눌림 (압박)	이물질 삼킴 (삽입) 및 흡입	화상	베임	음식물 섭취	기타
발생 건수	550	37	57	28	7	32	149	24	2	25	2	15	4	117	11	14	26
비율	100	6.7	10.4	5.1	1.3	5.8	27.1	4.4	0.4	4.5	0.4	2.7	0.7	21.3	2.0	2.5	4.7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당김 사고의 경우 교사에 의해 영유아의 팔이 당겨져 탈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상 사고의 경우 교사의 뜨거운 커피(차), 텀블러나 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 영아반의 경우 이유식을 데우고 난 후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아가 손으로 만진 경우 등이 발생되었음. 또한 글루건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글루건 사용 후 식히는 과정에서 교구장 위 등에 올려두어 유아가 만지는 경우나 부서진 교구를 보수하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글루건 액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 그것을 영유아가 손으로 만져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이 있음

사고유형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주요 안전사고(당김, 화상)
당김	• 기저귀 갈이 후, 영아를 일으키는 상황 중 팔탈구 발생 • 영유아 손씻기 중 소매를 걷어주다가 팔탈구 발생
화상	• 교사의 뜨거운 커피(차) • 텀블러나 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 • 이유식을 데우고 난 후 식히지 않을 상태에서 영아가 만진 경우 • 글루건 액이 충분히 마르지 않거나, 글루건을 잡아당긴 경우 • 헤어 고데기를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두어 사고 발생(발표회, 졸업사진 촬영)

ZOOM—IN 사례보기

주요 내용 및 활용 Tip

사고 사례 ❶

소매를 걷다가 손목이 탈구되었어요

점심 식사 전 손을 씻기를 위해 모두 화장실로 모였고, 선생님은 옷이 젖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옷소매를 걷도록 지도함. 그러던 중 혜림이가 손목 폭이 좁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 선생님이 직접 소매를 접어 올려줌. 그때 갑자기 손목 부분에서 "똑"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고 혜림이는 "아파~" 하면서 울기 시작함. 이후 혜림이는 물건을 잘 잡지 못하며 아파했고, 병원 검사 결과 손목이 탈구되었다는 진단을 받음

Tip 영유아의 관절은 매우 연약하여 탈구가 쉽게 일어나며 또 재발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함. 손목, 팔꿈치의 탈구가 가장 빈번하며 어깨, 발목, 골반 등의 탈구도 유의하여야 함

사고 사례 ❷

안전문을 닫지 못해 전기 주전자의 물이 쏟아졌어요

선생님은 영아(만 0세)의 분유를 타기 위해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음. 그리고 식히기 위하여 싱크대에 전기 주전자를 올려 놓고 다른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함. 이때 공동놀이실에 있던 곳에서 경훈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 뛰어갔고, 안전문을 미처 닫지 못함. 교사가 경훈이에게 간 사이 싱크대까지 기어간 이수는 전기 주전자의 선을 발견하고 잡아당김. 이 때 전기 주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뜨거운 물이 이수의 몸 전체에 쏟아져 큰 화상을 입게 됨

Tip 온수 사용은 영유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리실 안전문을 잠근 후 주방에서 끓여야 하며, 충분히 식힌 후 적정온도인지 확인해야 함. 전열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행사 준비나 환경 정리를 위해 사용하는 글루건 등과 같은 위험한 도구의 경우 하원 시간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며 절대 영유아와 함께 있는 보육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이 외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물체에 부딪힘(10.4%) 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소지품(휴대전화, 노트북 등)이 떨어지면서 부딪힌 경우가 많았으며 사람과 부딪힘(5.1%)의 경우 교사가 체구가 작은 영유아를 보지 못하고 이동(물건, 뒤돌다가)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음
- 긁힘(5.8%)의 경우 교사의 손톱이 스치면서 긁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눌림(2.7%)의 경우 교사가 낮잠 시간 중 이동하다가 영유아를 밟은 경우가 있었음
- 베임(2.0%) 사고의 경우 점심식사 중 음식물을 자르다가 영유아의 손가락이 닿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유형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주요 안전사고(그 외)
물체에 부딪힘	• 교사의 소지품(휴대전화, 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헤어 고데기 등)이 떨어짐
사람과 부딪힘	• 교사 이동 시 영유아를 보지 못하고 뒤돌다가 교사의 신체(팔꿈치, 손 등)에 부딪힘 • 들고 있던 물건(식판, 교구함 등)을 나르던 중 영유아와 부딪힘
긁힘	• 영유아 양치를 돕는 과정에서 교사 손톱에 긁힘 • 자유놀이 시간에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던 중 교사 손톱에 긁힘
눌림	• 낮잠 시간 중 교사 이동 시 영유아를 보지 못하고 밟은 경우
베임	• 음식을 잘라주려다가 영유아의 손을 보지 못하고 가위에 손이 집혀 상처가 난 경우

ZOOM—IN 사례보기

주요 내용 및 활용 Tip

사고사례

싹뚝싹뚝 가위

점심시간이 되어 선생님은 유아들이 자리에 앉게 한 후 배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메뉴 중 버섯의 크기가 큰 것 같아 가위로 잘라 먹기 편하게 제공하고 있을 때 이동 중이던 은정이가 선생님이 자르는 버섯 쪽으로 손을 쑥 내밀었음. 순간 음식을 자르던 선생님의 가위 끝에 은정이의 검지 손가락이 집혀 상처가 나게 됨

Tip 음식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거나 써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움. 식품 절단은 조리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미리 잘라 준비하도록 함

보육교직원이 원인이 되는 영유아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 원장은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함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영유아를 일으킬 때 무리하게 당기지 않기	
▶ 보육실로 뜨거운 커피(차), 텀블러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 보육시간 중 위험한 도구(글루건 등)를 사용하지 않기	
▶ 교사의 소지품(휴대전화, 노트북 등)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않는 곳에 보관하기 ※ 교사용 사물함 권장	
▶ 교사 이동 시 영유아의 이동동선 고려하기	
▶ 손톱 짧게 관리하기	
▶ 영유아 낮잠 시간 중 교사 이동 시 주의하기	
▶ 음식은 조리실에서 자르기	

참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요 안전사고

주요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전제가 될 때,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뿐 아니라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육교직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과 사고원인을 살펴보며 사고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 본 통계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청구한 자료이며, 보육교직원 상품의 경우 전체인가시설('19년 기준, 37,371개소) 대비 22,574개소(60.4%)의 통계이므로 보육교직원 사고의 절대적인 통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요사고 세부분석

가. 보육교직원 직군별 안전사고 현황

직종별로는 보육교사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원 15.7%, 원장이 12.6%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9)의 보육교직원 현황을 고려하면 조리원의 인원대비 청구건*이 다른 교직원에 비해 높은 편임

*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9) 보육교직원 직종별 현황 : 보육교사: 72.4%, 원장: 11.2%, 조리원: 9.4%, 특수교사: 0.6%, 간호사: 0.3%, 영양사: 0.3%, 치료사: 0.2%

〈표 Ⅰ-12〉 보육교직원 직군별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	특수교사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기타
계	1,682 (65.8)	402 (15.7)	323 (12.6)	35 (1.4)	11 (0.4)	8 (0.3)	1 (0.0)	93 (3.6)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ZOOM—IN 사례보기

주요 내용 및 활용 Tip

사고사례

조리사 선생님이 다쳤어요

점심으로 준비한 어묵국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조리사 선생님. 보조 조리사 선생님께서 돕기 위에 왔다가 전선에 발이 걸리며 어묵 통을 발로 찼고, 뜨거운 국이 쏟아지며 조리사 선생님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음

Tip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이 늘어져 발에 걸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이거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쪽 또는 벽면에 붙임. 불 사용 시 가급적 인덕션을 사용하고, 뜨거운 것을 바닥에 내려놔야 하는 경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을 정해 반드시 그곳에만 놓음

나. 사고 당시 활동별 사고 원인

사고 당시의 활동별 청구 현황은 실내보육활동 시(22.1%), 급·간식 조리 시(16.7%), 실외보육활동 시(11.3%), 청소 중(9.8%), 교재교구 제작 및 수업준비(9.7%) 순으로 나타남

〈표 Ⅰ-13〉 보육교직원 사고 원인·사고 당시 활동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실내 보육 활동	급·간식 조리	실외 보육 활동	청소	교재 수업 준비	등원 귀가 지도	식사 간식 지도	보육 활동 이외	행사 준비	화장실 지도	낮잠 지도	기타	계
계	564 (22.1)	426 (16.7)	288 (11.3)	251 (9.8)	249 (9.7)	230 (9.0)	122 (4.8)	120 (4.7)	118 (4.6)	72 (2.8)	44 (1.7)	71 (2.8)	2,555 (100.0)
보육 교직원	260 (46.1)	350 (82.2)	164 (56.9)	168 (66.9)	208 (83.5)	135 (58.7)	70 (57.4)	74 (61.7)	85 (72.0)	27 (37.5)	15 (34.1)	52 (73.2)	1,608 (62.9)

* 기타 사고원인(영유아, 시설설비 등) 건 비공개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통계자료집

특히 교재교구 제작 및 수업준비, 급간식 조리 활동 시에 보육교직원 본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다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 중 교재교구 제작 및 수업준비 시의 부상유형을 살펴보면 베임과 화상 사고가 많아 보육교직원은 날카로운 물건(가위, 칼 등), 뜨거운 기구(글루건, 코팅기계 등)의 사용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급·간식 조리 시의 부상유형은 베임, 화상 사고가 많으므로 식자재 절단 작업 시 장갑을 꼭 착용하고 모든 조리과정 단계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전열기구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Ⅱ 관련법령 및 정책

1. 안전관련 법규
2. 안전관련 지침
3.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4. 어린이집 평가제

Ⅱ 관계법령 및 정책

들어가기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한 법령과 조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인적·물적 환경과 보육과정 속에서 다방면으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법규

어린이집에서 알아두어야 할 어린이집 시설·설비 및 안전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전기사업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도로교통법	● 환경보건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어린이안전관리법		

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복지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관련 내용은 영유아 안전교육을 들 수 있음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③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④ 재난대비 안전 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이 알아야 할 주요 안전관련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관련 [별표 1]에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 설치 기준의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은 이점을 유념하여 안전한 어린이집 시설 관리에 유의하도록 함. 또한 등·하원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도 영유아보육법에 등재됨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제18조의2	보육교직원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법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1] 등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① 영유아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②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③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33조의3	등 · 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4조의2	보호자 교육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② 보호자의 역할 ③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④ 가족윤리 및 예절 ⑤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은 [별표 1]과 같음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

1)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공제상품 문의(TEL 1600-0611)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분	조항		주요 내용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
	제25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제41조	소방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함 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시행령[2]	제24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⑬까지 확인
시행규칙	제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2) 화재, 화재배상 책임특약 공제상품 문의(TEL 1600-0611)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제12조4항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제15조1항	안전점검 실시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제17조1항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
	제20조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물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해야 함
	제21조	보험가입[3]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제22조1항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17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①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TEL 1600-0611)

바.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30조	보험가입[4]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

사. 기타 법령

법령	관련 내용
교통안전법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관련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TEL 1600-0611)
5) 가스 사고 배상책임 공제상품 문의(TEL 1600-0611)

2 안전관련 지침

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전반적인 지침이 수록되어있으며,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서는 안전관리 원칙과 분야별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Ⅱ-1〉 분야별 안전관리(물리적, 인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원장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안전관리 및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 •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표 Ⅱ-2〉 대상별 안전교육(영유아, 보육교직원, 부모)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신규 교육대상자 우선 참여 유도)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함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표 Ⅱ-3〉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ZOOM—IN 원내 자율 교사연수

(개정)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안전내용에 관하여 살펴봄

3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이라 함)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함

가. 표준보육과정 목표(안전 내용)

0~2세 보육과정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몸을 마음껏 움직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여 조절하는 경험을 함. 또한 영유아에게는 일상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경험을 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감

출처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나.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

구분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0~2세 영역별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듣기와 말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과정 즐기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더불어 생활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책과 이야이 즐기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구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3~5세 영역별 내용 (누리과정)	신체활동 즐기기	듣기와 말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과정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더불어 생활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에 관심가지기	예술 감상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출처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다.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목표 및 안전 내용

구분		0~1세(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2세(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역별 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2)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내용 범주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0~1세 영아가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내용	• 2세 영아가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 및 일상생활을 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를 조심하여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는 내용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 0~1세 영아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내용	• 2세 영아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통수단의 위험을 인식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내용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 0~1세 영아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반응을 보이며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2세 영아가 사고, 화재, 재난 등 위험한 상황에서 어른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해보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대처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구분		3~5세(신체운동·건강 ▶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역별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내용 범주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유아가 일상에서 위험한 장소, 상황, 도구 등을 알고 안전한 놀이 방법과 놀이 규칙을 지키며 놀이하고 생활하는 내용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 유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며, 바른 자세로 이용하는 내용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 유아가 안전한 보행 및 도로 횡단, 교통기관의 안전한 이용 등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실천하는 내용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 유아가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며, 평소 훈련에 따라 대피하는 연습을 하는 등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라. 표준보육과정에서 살펴본 놀이와 안전

주요 내용	
▶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영유아 배움의 지원 •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상생활 습관지도나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운영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놀이 안전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 • 안전교육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화재안전, 교통안전, 약물안전, 유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안전교육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도	
0~2세 보육과정	• 영아의 경우 대집단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놀이와 연계하거나 전이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3~5세 보육과정	• 유아 및 놀이 중심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예: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유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 교사는 안전한 놀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안전을 이유로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는 않는가?	
▶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가?	
▶ 새로 찾아본 놀이 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유아와 함께 점검하였는가?	
▶ 모든 구성원이 놀이와 안전에 대해 소통하였는가?	

출처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4 어린이집 평가제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되어 시행('19년 6월 12일) 중임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는 제3차 평가인증에서 적용된 통합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반영하여 세부내용을 변경함

어린이집 평가제 안전영역의 지표내용은 실내외 공간이 청결 및 안전, 등·하원의 안전,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등에 대해 평가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한국보육진흥원, 2021)

〈표 Ⅱ-4〉 어린이집 평가제 안전영역의 지표 및 평가내용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1-1	•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3-1-2	•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3-1-3	•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4	**등·하원의 안전**
3-4-1	•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3-4-1-4	•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3-4-2	•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4-2-4	•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한다.
3-4-3	•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3-4-3-4	•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5-1	•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5-2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3-5-2-1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3-5-2-4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한다.
3-5-3	•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2021).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III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1. 어린이집 안전관리 기본방향
2.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방안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리절차

참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내용으로 알아보는 공제용어

Ⅲ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들어가기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점검해야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매뉴얼대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전-중-후에 관하여 알아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의 처리절차를 익히도록 한다.

1 어린이집 안전관리 기본방향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설비 점검, 재난 상황(화재, 태풍, 호우, 대설 등)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야 함. 또한 비상 상황 대응에 효과적인 모의훈련 실시를 위한 세부 훈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관리 매뉴얼 속에 넣어 관리하도록 함

(1) 평상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 어린이집 원장(안전관리책임관[6])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평상시에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대응계획, 응급구조 등 어린이집 안전업무 구성요소에 대하여 업무를 세분화 시키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함

(2) 유사시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해당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유사시에는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방안과 원내지원 방안으로 나뉨

〈표 Ⅲ-1〉 안전사고 평상시, 유사시 점검 관련

총괄

어린이집원장/안전관리책임관(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7])

평상시

가 안전교육	나 안전점검	다 비상대응계획	라 응급구조
• 영유아 교육 • 보육교직원 교육 • 부모 교육	• 실내·외 환경점검 (일별, 월별)	• 비상조직 구축 (비상 연락체계, 업무분담) • 비상훈련 실시 (훈련계획, 시행 등)	• 응급구조 지원 • 응급처치 교육

유사시

현장대응	원내지원
• 구호(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 남은 영유아 관리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고 조사 및 정보수집 • 사고보고작성	• 비상연락(전체 학부모 등) • 언론대응 및 외부전화 응대 • 운영위원회 소집 • 교사회의 개최 • 보육일정 검토 • 사고 복구를 위한 사후관리 • 행·재정 지원

6) 안전관리책임관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원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 수행

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관련 담당자 지정(p.28 참고)

가.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대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직원, 부모로 나누어 안전교육 계획을 세움. 영유아에 관한 안전교육으로는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8]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보육교직원에 관한 안전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의 장이 점검해야 할 어린이집 안전관리교육(소방,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과 보육교직원 안전관련교육은 아래 표와 같음. 부모대상 안전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및 가정통신문의 안내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9]

〈표 Ⅲ-2〉 어린이집 원장(안전관리책임관) 안전교육

교육명	어린이집 원장(안전관리책임관) 교육		
	관련법령	대상	내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신규교육 : 신고, 변경신고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오프라인교육 • 보수교육 : 2년마다 4시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 교육시간 : 온라인 20분 2차시, 오프라인 4시간 • 신규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 보수교육 :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신규교육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내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 관리책임자	• 교육시간 : 오프라인 6시간, 온라인 6시간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	• 교육시간 : 2년에 1회(4시간)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관련교육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4시간 교육 - 응급구조 안전수칙 등 이론 2시간, 기본인명 구조술 실습 2시간
통학차량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운영자 • 운전자 • 동승보호자	• 교육시간 : 3시간 • 신규교육 : 통학차량 운행 전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정기교육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2년마다)

※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

8)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9) 본 책 5장 어린이집과 가정 안전연계 참고

〈표 Ⅲ-3〉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육명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내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조 별표8	• 보육교직원	• 연 1회 실시 • 안전사고 예방교육 : 3시간[10]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관련교육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4시간 교육 - 응급구조 안전수칙 등 이론 2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

※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

나. 안전점검

(1) 실내·외 환경의 주기적 안전점검(일별, 월별) 자체적 실시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11]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체 점검은 보육사업안내 서식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

점검표의 안전분야에서는 실·내외 환경, 놀잇감 및 놀이기구, 화장실 등에 관한 내용임. 기타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 설비 안전관리는 본 책 [부록 2]를 참고하도록 함

〈표 Ⅲ-4〉 일별 점검표

(점검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구분	점검항목
실외 환경	• 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실외놀이 공간 주변의 돌, 유리조각, 요철, 녹이 슨 부분, 벗겨진 페인트, 돌출된 모서리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실내 환경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 보육용품이나 비품 유리창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는가?

10)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 참고

1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점검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구분	점검항목
놀잇감 및 놀이기구	• 망가져 날카롭고 위험한 것 또는 부품이 빠지거나 작은 볼트 등이 빠진 것은 없는가? • 유해 색소가 칠해진 놀잇감은 없는가? • 영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화장실 세면대	• 화장실 내 세제나 락스 등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전기, 화기 위험물	•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잠금은 양호한가?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 안전분야 내용 일부 발췌

〈표 Ⅲ-5〉 월별 점검표

(점검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구분	점검항목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 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실외 환경	• 어린이집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실내 환경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현관, 통로, 계단, 비상구	• 출입문, 현관문 등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는가?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화장실·세면대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실내·외 놀이기구 및 공간	• 모든 놀이기구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놀이 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영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 인가? • 기초대, 지지대 등 매설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 모든 놀이기구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의 충격흡수재 성능은 양호한가? • 보수가 필요한 놀잇감 및 놀이 기구가 방치되어 있는가? •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안전검사(KC 인증 등)를 필한 제품인가?
⋮	〈중략〉
비상대피 시설관리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 내용 일부 발췌

다. 비상대응계획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의 안전사고 평상시, 유사시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비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매뉴얼을 통하여 유사시 현장대응 방안과 원내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보고체계, 시나리오 대로 대처하도록 함

보육사업안내 부록(보건복지부, 2021)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크게 계획 수립, 시행, 조치의 순으로 설명되어있음

① 계획 — 어린이집 비상대응 계획 수립 ▶ ② 시행 — 각 비상상황별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조치 — 훈련 실시 후 개선을 위한 조치

① 계획 어린이집 비상대응계획 수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에 의거하여 소방계획 및 훈련을 월 1회 진행하고, 기타 지역적 특성(폭우, 지진 등이 잦은 지역)을 고려하여 각 비상상황별 대응안을 추가로 진행함. 대피훈련은 실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건물 외부로 대피하는 훈련을 말함. 대표적으로 화재, 지진 등을 들 수 있는데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 등을 대비한 대피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은 대피가 아닌 대응계획의 하나임

※ 대피훈련과 대응계획을 구분하여 수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위생관리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함

보육사업안내(2021).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해야 함

어린이집 평가제[지표 3-5-1-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영유아가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월 1회 이상 있음 ※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 등도 포함이 가능함

이때, 안전관리책임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며 그 내용으로는 크게 어린이집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역할분담 계획, 비상대응절차 수립 등이 있음

(1) - ① 비상연락체계 구축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어린이집 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12]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함

〈표 Ⅲ-6〉 비상연락체계(예시)

화재 및 재난	의료기관	전기, 가스, 통신	코로나19 관련
기관명/연락처	기관명/연락처	기관명/연락처	기관명/연락처
• OO소방서 119, 000-0000 • OO경찰서 112, 000-0000	• OO병원 응급실 000-0000 • OO소아과 000-0000 • OO화상전문병원 000-0000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가입 통신사 000-0000	• 질병관리본부 1339 • OO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00-0000 • 방역소독 관련 000-0000 • 선별진료소 OO병원 000-0000

※ 안전사고 발생 시 가까운 병원 외에 화상전문병원, 수지접합전문병원 확인 후 명시

비상연락망은 전화기 옆에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함. 또한 영유아 보호자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근무하고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 ② 유사시 업무분담표

어린이집 기본현황은 사고 발생 후 대피 시 반별 인원체크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기본현황 하단에 보육교직원별 업무분장표를 통하여 비상 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함. 안전사고 및 재난 상황 업무분담계획 수립 후에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본인의 업무를 숙지하도록 함

그 밖에 각종 자연 재난 대비 황사, 폭염, 태풍·호우, 대설, 지진, 감염병 등의 재난 시 역할 분담표도 별도로 마련하여 실제 재난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업무분담표에 따라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12)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병원(보건소, 소아과 등),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표 Ⅲ-7〉 어린이집 기본현황 및 업무분담표(예시)

〈 OO 어린이집 기본현황 〉

총정원	반명(연령별)						총 교직원수	반명(연령별)		
	구분	A반 (만0세)	B반 (만1세)	C반 (만2세)	D반 (만3세)	E반 (만4-5세)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00	정원	0	0	0	0	0	0	0	0	0

〈 비상 및 재난 발생 시 업무분담표 〉

담당자	업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돌발상황 발생 시
원장 (안전관리책임관)	• 지휘명령총괄	• 지휘명령총괄 • 응급기관 연락(119신고) • 화재 및 재난장소확인 •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방활동	• 지휘명령총괄 • 지자체 보고 및 보고서 작성(외부)	• 지휘명령총괄 • 지자체 보고 및 보고서 작성(외부)
A교사 (주임)	• 통보연락 • 등원 영유아 현황 확인 • 원장에게 보고	• 비상사태 시 비상벨 및 원내 전달 • 대피유도 • 전원 차단, 관계기관 통보	• 보호자와 관계기관 통보 • 응급처치 및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	• 119신고 및 원내 전파
B교사	• 문서 및 물품관리 • CCTV 관리	• 주요 서류와 물건 반출 • 건물 내 단속 및 비상문 개방	• 사고 문서 작성, 관리 (내부) • CCTV 사고영상 확보	• 비상문 개방 • 관계 기관 통보
C교사	•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매뉴얼 관리	• 인원파악 및 상해 유무 확인 • 응급처치 및 지정 병원으로 긴급후송	• 안전사고 장소확인 및 현장보존	• 대피유도
D교사	• 비상시 통합 연락망 관리 • 관내 안전관리기관 연락망 관리	• 대피 후 영유아 보육 총괄	• 유아반 보육	• 유아반 보육
E교사	• 응급처치 및 후송 • 구급약품관리	• 병원 후송 • 응급처치	• 응급처치	• 응급처치
F교사	• 보호자 연락 담당	• 대피유도 • 보호자에게 연락	• 영아반 보육	• 영아반 보육
조리원	• 조리실 점검 • 가스, 보일러, K급 소화기, 전기 점검	• 대피유도 및 보육보조 • 가스차단, 전기차단	• 보육업무 보조	• 보육업무 보조

출처 :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용] 비상대피 훈련 시나리오. 세부 업무분장 내용 재구성

② 시행 각 비상상황별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집 연간 훈련계획 수립은 해당연도의 훈련계획(훈련 시기, 훈련 유형, 훈련 주요내용, 재난 종류)을 연초에 1회 수립함. 훈련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황별 대응절차 실행 및 대응물품을 준비하고, 훈련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함. 훈련계획은 지역적 특성을(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등) 고려하여 계획함

〈표 Ⅲ-8〉 훈련의 유형

훈련유형	훈련내용
도상형	• 위기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에 따라 연습 참가자가 제반 조치사항을 도상 또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훈련
토의형	• 연습 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토의하거나 자유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발췌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훈련
실제형	• 시나리오에 따라 연습 참가자가 인력, 장비, 물자 등을 동원하여 실제 행동으로 제반 조치를 수행하는 훈련

출처 : 행정안전부(2012).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훈련 기본지침

(2) - ① 비상대응 운영계획(연간) 수립

〈표 Ⅲ-9〉 비상대응계획 연간 시나리오 내용(예시)

월	재난 종류	발생장소	발생시각	비상대응계획 시나리오 내용	비고
3	화재	교사실	10:00	• 교사실에서 교사 컴퓨터 과부하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코로나19	-	08:00	• 통학차량 운전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	대응 (도상)
4	화재	C반	11:00	• C반 교실 공기청정기콘센트에서 스파크 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미세먼지	전체	등원전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대응 (도상)
5	화재	화장실	10:30	• 화장실 칫솔소독기에서 누전으로 화재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황사	전체	11:00	• 황사가 심각 상태로 발효된 상황	대응 (도상)
6	지진	전체	10:00	• B반 교실에서 먼저 흔들림 감지하여 전체에게 알리고 대피	대피 (실제)
	집중 호우	전체	11:30	• 집중 호우로 어린이집 앞 하천에 물이 불어나는 상황	대응 (도상)
7	화재 폭발	보일러실	불시	• 어린이집 보일러실 가스 누출 후 폭발위험으로 대피	대피 (실제)
	태풍	전체	15:00	• 오전부터 태풍이 발효되었고, 오후 15시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지나갈 예정	대응 (도상)
8	화재	조리실	10:30	• 조리실에서 식사준비를 위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불씨가 번짐	대피 (실제)
	폭염	전체	-	• 지속되는 폭염으로 폭염경보가 발생	대응 (도상)
9	지진 화재	전체	12:00	• 어린이집이 흔들리고 전기 합선위험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홍수	B반	등원전	• 전날 불어난 물로 어린이집 지하층이 물에 잠긴 상황	대응 (도상)
10	화재	화장실	10:30	• 화장실의 세탁기 내부에 습기로 인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강풍	전체	09:00	• 오전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황	대응 (도상)
11	지진	전체	10:00	• C반 교실에서 먼저 흔들림 감지하여 전체에게 알리고 대피	대피 (실제)
	돌발상황	전체	-	• 어린이집 앞에서 괴한이 손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	대응 (토의)
12	폭설	A반	11:00	•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하여 어린이집 지붕이 내려앉은 상황	대피 (실제)
	결빙,한파	전체	15:00	• 한파가 2일 동안 계속 되고 밤사이 눈이 내려 어린이집 앞이 얼어붙은 상황	대응 (도상)
1	화재	C반	11:00	• C반에서 생일잔치 중 촛불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대피	대피 (실제)
	영유아돌연사	B반	10:00	• B반에서 우유를 먹고 잠든 A가 깨울 준비를 하려는데 창백하고 몸이 차가운 상황	대응 (토의)
2	지진	전체	불시	• 어린이집의 창문의 흔들림을 감지하여 대피	대피 (실제)
	대설	전체	16:00	• 등원 후 눈이 내려 5㎝두께의 눈이 쌓이고 눈이 오는 상황 (대설 주의보)	대응 (도상)

출처 :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용] 비상대피 훈련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재구성

(2) - ② 비상대응 훈련 계획

비상대응 훈련 계획은 비상대응 운영계획(연간)에 따라 훈련의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방법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수립 및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안전관리책임관) 및 안전관리 담당 보육교직원으로 함. 훈련참여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모든 영유아로 함. 훈련의 종류는 실제훈련, 토의훈련, 도상훈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비상계획 수립 일시, 변경 일시 등을 반드시 포함.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외부 피난장소 및 집결장소를 명시하도록 함

③ 조치 훈련 실시 후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실시 후 안전관리책임관을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미흡했던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고,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함. 필요 시 관련 행정기관에 훈련결과를 보고함

MEMO

예시 OO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 화재

결재	담당자	안전관리책임관

훈련명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훈련일시	2021년 3월 17일
재난상황	☑ 화재 ☐ 지진 ☐ 폭설 ☐ 복합(___+___) ☐ 기타	훈련 진행책임자	안전관리책임관 및 안전관리자
발생시점	☐ 자유놀이 ☐ 간식 ☑ 활동 ☐ 점심 ☐ 낮잠 ☐ 기타		
참가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명, 영유아 50명		
기상상황	☑ 맑음 ☐ 비 ☐ 눈 ☐ 강풍 ☐ 한파 ☐ 폭염 ☐ 기타		
발생장소	☐ 현관 ☐ 출입구 ☐ 복도 ☐ 계단 ☐ 보육실 ☐ 화장실 ☑ 조리실 ☐ 식당 ☐ 공동놀이실 ☐ 옥외놀이터 ☐ 울타리 ☐ 교사실 ☐ 기타공간( )		
훈련 종류	☑ 실제훈련 ☐ 도상훈련		
훈련 목적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를 위해 비상계획에 명시된 대피에 관련된 내용을 훈련함 (대피 시간 줄이기에 중점)		
비상대응상황 시나리오	조리실의 누수로 인해 전기 배선으로 물이 침투하여 약 11시경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경보기가 울림		

훈련 내용		
상황	대응 활동	평가중점내용
조리실에서 화재 발생하여 화재 경보발생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시도	소화기사용
	각반의 영유아 대피 실시	질서유지하며 대피
	119 연락	위치, 상황설명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화세 확장	조리실 앞의 방화문을 내리고 계속적으로 영유아를 정해진 장소로 대피시킴 (방화문이 없는 경우, 조리실 문을 닫고 대피함)	대피시간/ 대피한 영유아 수
	대피 후 부상자 사상자 확인	부상자 사상자응급처치
119 출동 후 화세 진압 후 사태 종료	안전한 곳에서 대피 지속, 인근 병원 연락, 영유아 부모에게 연락	연락시간/ 응대태도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내용 재구성

예시 OO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평가서 : 화재

결재	담당자	안전관리책임관

훈련명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훈련일시	2021년 3월 17일
재난상황	☑ 화재 ☐ 지진 ☐ 폭설 ☐ 복합(___+___) ☐ 기타	훈련 진행책임자	안전관리책임관 및 안전관리자
발생시점	☐ 자유놀이 ☐ 간식 ☑ 활동 ☐ 점심 ☐ 낮잠 ☐ 기타		
참가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명, 영유아 50명	대피시간	2분 25초 (총 대피시간 초단위 측정)
기상상황	☑ 맑음 ☐ 비 ☐ 눈 ☐ 강풍 ☐ 한파 ☐ 폭염 ☐ 기타		
발생장소	☐ 현관 ☐ 출입구 ☐ 복도 ☐ 계단 ☐ 보육실 ☐ 화장실 ☑ 조리실 ☐ 식당 ☐ 공동놀이실 ☐ 옥외놀이터 ☐ 울타리 ☐ 교사실 ☐ 기타공간( )		
훈련 목적	어린이집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를 위해 비상계획에 명시된 대피에 관련된 내용을 훈련함 (대피 시간 줄이기에 중점)		
비상대응상황 시나리오	조리실의 누수로 인해 전기 배선으로 물이 침투하여 약 11시경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경보기가 울림		

훈련 내용		평가	
대응 활동	평가중점 내용	평가항목	평가(기술)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 시도	소화기사용	소화기 위치를 빠르게 파악했는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였는가?	
각반의 영유아 대피 실시	질서유지하며 대피	남아있는 원아 없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였는가?	
		영유아는 질서를 지켜 대피를 하였는가?	
119 연락	위치, 상황설명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119에 연락하여 전달하였는가?	
조리실 앞의 방화문을 내리고 계속적으로 영유아를 정해진 장소로 대피시킴	대피시간/ 대피한 영유아 수	방화문의 위치를 파악하여 작동을 실시하였는가?	
		대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대피한 영유아의 인원파악을 하였는가?	
대피 후 부상자 사상자 확인	부상자 사상자 응급처치	부상상태를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사상자 응급처치를 진행하였는가?	
안전한 곳에서 대피 지속, 인근 병원 연락, 영유아 부모에게 연락	연락시간/ 응대태도	병원에 방문 여부를 확인(기록)하였는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였는가?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내용 재구성

2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방안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육교직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각 보육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와 상황 등을 이야기 나누며 1차적으로 응급처치 그리고 보호자와의 상황보고를 통하여 영유아의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함

1. 재난 등 비상상황

어린이집에서의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상황 훈련을 바탕으로 즉시 대응하며, 실제 일어난 재난 상황 등에서 대처하지 못한 역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 수습 후 보육교직원과 업무분담표[13]의 역할을 토대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2. 일반적 안전사고 발생 시 보육교직원 대응방안(원장, 보육교사)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후에 사고 영유아의 보호자와 소통하는 방법 또한 중요함. 먼저 작은 사고라도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한 보호자들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우려와 부담으로 올바른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더 큰 오해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 이에 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와의 소통방법을 익혀 보호자와의 오해나 갈등을 좁히도록 해야 함

가. 응급처치 후 즉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

장소 및 위치, 상황(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영유아 상태, 응급조치, 병원방문 등을 상세히 설명함

ZOOM—IN 사례보기

예) "어머님, OO이의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부분에 0.3cm 정도 베이는 상처가 생겨서 바로 지혈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에 실외놀이터에서 놀던 중 바로 옆에 큰 나무 있는거 아시죠? 나뭇가지를 주워 놀이를 하다가 긁혔어요. 처음에 피를 보자 조금 놀라긴 했는데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여주니 금세 방긋 웃으며 친구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3) 업무분담표 p.45 참고

나.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

사고로 인해 놀랐을 보호자의 감정에 공감해주며 보호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경청함. 또한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태를 묻고 사고에 대한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함

ZOOM—IN 사례보기

예) "아버님, 많이 속상하시죠?"
"우리 OO이는 지금 집에서는 어떠한가요?"
"어린이집에서 더욱 신경 써서 봤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4세 반의 미술시간에 연필을 사용해서 그림그리기를 하는데 지우개가 필요했던 A는 중간에 놓여있는 필기도구 상자에서 지우개를 찾아 자리로 돌아감. 마침 지우개가 필요했던 B는 A에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고, A가 대답하지 않자 B가 사용함. 그러자 대답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B에게 화가 난 A는 연필로 B를 찌름. 뾰족한 연필심에 B는 긁혀 찰과상을 입음 ▶ **두 유아가 다툰 상황**

원칙

- 빠르게 대처하기 (be quick)
-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be accurate)
- 일관성 있게 응대하기 (be consistent)

보호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작성

- 보호자에게 갈등(사고)의 상황을 전달할 때, 일어난 상황 그대로 사실적으로 전달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게 행한 응급처치나 갈등상황의 해결을 설명
- 피해아동과 행위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 교환 및 중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

※ 단, 서로 부모 간에 통화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 줄 때에는 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야 함

보호자와의 연락 담당자를 설정

- 어린이집 원장과 영유아의 담임교사 중 보호자와 연락할 사람을 설정

※ 심각한 사고의 경우 가급적 어린이집 원장이 연락하되, 다툼으로 인한 타박상 등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므로 해당 담임교사가 연락하도록 함

- 보호자와의 연락 전에 원장과 담임교사는 서로 정확한 상황에 대해 공유

다. 사고가 일어난 후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소통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상황별 소통 방안

-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 매일 전화를 하며 영유아의 상태를 파악함
- 영유아가 병원에 다닐 경우 : 현재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며 언제 어린이집에 등원이 가능한지 파악함
- 영유아가 등원하고 있을 경우 : 매일 등·하원 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영유아의 하루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함
- 보호자와 만나지 못하는 경우 : 전화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영유아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영유아의 담임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모두 영유아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보호자를 대함

라. 부상 시 후속 정보를 알아보고 이를 부모에게 전달

보호자에게 보상과 관련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함

ZOOM—IN 원내 자율 교사연수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흐름도

가 사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

장소 및 위치, 상황(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영유아의 상태, 응급조치, 병원방문 등을 상세히 설명

나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

사고로 인해 놀랐을 부모의 감정에 공감

부모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경청하며 공감

사고가 난 날 저녁, 부모에게 연락하여 아이의 상태를 묻고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

다 사고가 일어난 후 지속적으로 보호자와의 소통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의 현재 상태와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한 날을 물어봄

영유아가 등원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등·하원시 보호자에게 물어보고, 원에서 영유아가 보낸 하루 생활을 이야기 함

라 보상관련 정보 전달

보호자에게 보상과 관련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줌

3. 응급처치 및 보육환경관리방안

가.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1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육교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원장 또한 당황한 보육교사를 안정시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협조
-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

2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법 실시

- 질식, 심한출혈, 충격 등 인지
- 심하게 부상당한 영유아의 억지 이동 금지

3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 부상이 심하거나 부상정도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나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진행
-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따라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4 보호자에게 연락

- 입소시 받은 서류(부모동의 및 조사서)에 적힌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설명

5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6 사고보고서를 작성

- 사고보고서 양식(보육사업안내 부록 : 영유아 사고보고서)에 따라 부상 상황과 응급처치에 대해 상세히 서술

나. 상해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와 보육환경관리방안

(1) 찢어짐(타박상, 찰과상, 베임 등)

ZOOM-IN 사례보기

넘어짐	하원 시, 신발을 신고 나가는 도중 완전히 신겨지지 않은 신발에 걸려 넘어졌고,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눈 옆부분이 찢어짐
긁힘	자유놀이 시간에 함께 놀던 두 유아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A유아가 B유아의 얼굴을 연필로 찔러 찰과상을 입게 됨
베임	자유놀이 중 역할영역에 있던 교구를 서로 갖겠다며 당기다가 부서졌고 보육교사에게 갖다 주려다가 베임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영유아들은 급히 행동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안정된 운영이 필요 • 영유아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보육교직원의 각별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
보육 환경 관리	• 영유아들의 움직임이 많은 공동놀이실, 실내·외 놀이터는 완충재를 꼭 설치 • 어린이집 내의 기둥, 벽면, 모서리에도 안전장치 설치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제공 • 일과 시작 전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따른 확인

응급처치

- 가벼운 상처의 경우 깨끗한 상처는 항생제 연고를 얇게 바르고 밴드를 붙임
- 더러운 상처인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깨끗한 거즈(무균)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 등을 붙임
- 더러운 상처 중 토양, 분변, 타액에 오염된 상처, 화상, 동상에 의한 상처 등은 파상풍 백신 접종 또는 파상풍 능동 면역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병원 방문이 필요
- 상처가 깊은(진피층까지 침범) 경우나 상처가 큰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흉터가 심할 수 있어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 필요
-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아이의 예방 접종력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

(2) 골절, 탈구

ZOOM—IN 사례보기

당김	식사 후 양치질을 하려는 중 이를 닦지 않으려는 A가 보육실로 가겠다며 뒤돌아 뛰어가는 찰나에 선생님이 팔을 당겼고, 팔꿈치가 탈구
추락	B영아가 책상 위에 있는 놀잇감 인형을 발견하고 기어 올라갔다가 선생님 소리에 내려오는 중 몸의 균형을 잃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짐, 미세한 골절 진단
물체에 부딪힘	자유놀이 시 나무블록 쌓기를 하던 중 생각보다 높에 쌓아올려진 나무블록이 무너지며 C의 새끼발가락에 떨어짐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영유아들은 호기심은 많으나 물체의 속성과 자신의 움직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속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 • 영유아는 올라가려는 욕구가 있으며, 시야가 넓게 바라보이는 높은 곳에서 놀이하는 것을 좋아함
보육 환경 관리	• 영유아들의 동선과 움직임, 키 높이 등을 고려하여 문, 가구, 벽면, 기둥 등의 모서리를 포함한 동선에 완충재를 부착하고 위험 표시를 함 • 창문에 추락방지기구(보호대와 난간) 등을 설치 • 가급적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자유놀이 하며,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위험요소를 영유아 놀이시 인지하도록 지도 • 교사회의 시 영유아들의 이동 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함을 전달

응급처치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
-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부목이 있다면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없다면 나무판, 박스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3) 치아손상

ZOOM—IN 사례보기

사람과 부딪힘	화장실에서 손을 다 닦은 A유아가 급하게 세면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B유아의 얼굴을 팔로 침. A의 팔꿈치에 맞은 충격으로 B의 치아가 빠짐
물림 (사람)	실내놀이터에서 놀던 C는 놀이시간이 끝나감을 알리는 교사의 목소리에 마음이 급해져 뛰어내림. 이때 치아에 힘을 꽉 주어 뛰어내려 입 안쪽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림
음식 섭취	점심시간 반찬 중 닭강정이 나와 D가 맛있게 먹던 와중에 치아가 갑자기 아파서 교사에게 말함. 교사가 확인해보니 D의 앞니가 조금 흔들림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영유아들의 이는 새로 나고있기 때문에 마모가 덜되어 매우 뾰족하고 깊이 상처가 날 수 있음 • 영유아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조망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상대를 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남 • 고의적으로 하는 공격 행동보다는 우발적으로 생기는 상황이 많음 • 영유아들은 서로 의사소통보다는 행동, 몸짓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대게 놀이하다가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상대방을 물거나 때림
보육 환경 관리	• 영유아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로를 확보하고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공간은 서로 거리를 두고 배치 • 고정식 놀이기구(미끄럼틀, 볼풀장 등)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놀잇감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놀잇감을 넉넉히 구비 • 영아반 보육실의 완충의 역할을 하는 매트 구비 • 원장은 식단표를 확인하여 딱딱한 음식의 경우 영유아들이 먹기에 적합한 무르기로 조리하도록 조리원과 소통

응급처치

- 부러진 이가 땅에 떨어졌다면 부러진 치아의 씹는 면을 잡고 생리식염수를 부어 씻어낸 후 차가운 흰 우유에 넣은 다음, 얼음팩과 함께 아이스 박스에 넣어 30분 이내에 치과로 가져감
- 영구치가 빠졌는데 영구치와 유치 구별을 하지 못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부모와의 통화) 후 조치함

(4) 화상

ZOOM-IN 사례보기

화상	화장실에서 A의 얼굴에 묻은 이물질을 닦기 위해 교사가 씻겨주던 중 영아가 갑자기 발버둥치며 미지근한 물이 나오던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방향으로 트는 바람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며 화상
	교사를 위해 끓인 커피 물, 환경 미화를 하던 글루건, 보육실 정리를 위한 스팀 청소기 등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영유아는 소리와 냄새 등 음식의 화학적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 • 영유아의 여린 살결과 피부는 짧은 시간 햇볕이나 열에 노출되어도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보육 환경 관리	• 세면대는 온수 온도와 유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절이 어려운 경우 온수조절장치 설치 • 정수기 온수 부분에는 반드시 잠금장치 설치 • 전열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관리 • 주방 출입구는 영유아가 출입할 수 없도록 분리 •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배식하고, 배식과정 중에는 영유아들이 이동하지 않도록 지도 • 교사회의 시 보육교직원이 보육실에서 커피, 차, 글루건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회의

응급처치

- 화상 부위를 물(수돗물 등) 또는 생리식염수 등으로 흘려보내며 상처를 식혀주는 것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10~20분)
-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아주 살짝만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함
- 초기 대응 후 젖은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뒤 신속히 병원 방문
- 주의사항
  - 물집을 제거하는 것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음
  - 크림, 연고,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화상은 육안으로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

※ 어린이집과 가까운 화상전문 병원 숙지

(5) 물렸을 경우(동물, 사람)

ZOOM-IN 사례보기

물림 (동물)	낮잠시간 후 실외놀이터에서 놀던 중 그네 옆 작은 식물에 붙은 벌을 A가 손으로 만졌고 벌에 쏘임
물림 (사람)	교사가 잠깐 다른 영역을 정리하는 순간 B영아가 C영아의 왼쪽 눈 밑을 치아로 물어버림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영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탐색하는 것을 좋아함 • 영유아들은 벌레나 곤충, 동물을 그림책 등으로 먼저 접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해서 경계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보육 환경 관리	• 원장은 실외놀이, 견학 등의 외부 활동 시 더 주의해서 아이들을 관찰하며, 가정통신문에 가급적 로션, 향수 냄새, 밝은 색 계통의 옷은 입지 않도록 안내 • 또래와의 갈등으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사와의 회의를 통하여, 원인을 논의하고 원인이 어린이집의 환경적(놀잇감 수 부족, 협소한 공간)인 측면에서 발생하였다면 찾아내어 보완

응급처치

[동물(벌, 곤충 포함)에 물린 경우]

-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며, 개방성 상처인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
-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
-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동물의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야생 동물인 경우 물린 장소, 시간, 동물의 특징 등 사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함
- 침이 박혀 있을 경우는 침을 잡아당기지 말고 신용카드 같은 것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을 제거하고, 침 끝에 남아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당기거나 상처 부위를 쥐어짜지 않도록 함
-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바름
-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사람에 물린 경우]

- 사람의 구강 내에는 입으로 물 때 옮겨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균들이 산재
- 사람에게 물렸을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6)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눈)

ZOOM—IN 사례보기

이물질 (코)	자유놀이 시간 원피스의 단추가 아침부터 마음에 들었던 A는 단추를 만지다가 단추가 떨어져 콧속에 넣어봄. 콧속 깊숙한 곳까지 단추가 들어가 버림
이물질 (눈)	실외놀이터에서 놀이하던 중 너무 재미있어 흥분한 B가 C의 얼굴쪽으로 흙을 던져 C의 눈에 들어감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코, 귀, 입속에 이물질을 스스로 넣는 경우가 빈번 • 외부 활동 시 내부와는 다르게 큰 공간으로 새로운 환경이나 놀이 기회속에서 쉽게 흥분하여 돌발적인 행동을 함
보육 환경 관리	• 교사회의 시, 영유아가 혼자 무엇인가 몰두해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밀히 관찰하도록 회의 • 원장은 오리엔테이션 등 부모상담 시 가급적 장신구가 많이 달린 옷을 피하도록 안내 • 실외공간(모래 등)을 살필 시 위험한 이물질 등이 없도록 관리

응급처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 면봉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점막 손상으로 코피를 유발할 수 있음
- 풀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코를 풀 수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눈)]

- 눈의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함
- 영유아가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눈을 비비지 않게 함
- 눈을 감게 하고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띠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

(7) 질식(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

ZOOM—IN 사례보기

음식물 섭취	점심식사 후, 놀이를 하던 A유아는 옷 바지 주머니에서 예전에 약국에서 받은 비타민을 발견함. 사탕을 가져오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급하게 먹었는데 목에 걸려 숨을 쉴 수가 없음. 이를 교사가 발견하고 하임리힘법 실시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사고 특징	• 음식물을 섭취할 때 딱딱한 음식의 경우 충분히 씹어야하는데, 씹는 힘이 발달하지 않는 영유아들은 알갱이가 있는 채로 삼키려 함 • 섭취 과정에서 사례가 걸리고 기도가 막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식 및 식사지도에 주의
보육 환경 관리	• 영유아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과 연계(가정통신문, 부모교육 등)

응급처치

[기도가 막힌 경우]

- 음식물이나 사탕, 장난감 등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을 감싸 쥐고 괴로워 할 때, 즉시 119에 연락하고 응급처치(등 두드리기 및 하임리히법)을 실시
- 이물 제거 도중 반응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가슴 압박 후 호흡을 하기 전에 입안을 들여다보아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이물을 꺼냄
- 단, 입안에 이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넣어 이물을 빼내려고 하면 이물을 인두 내로 더 깊게 밀어 넣거나 인두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빼내려고 하면 안 됨

완전히 막힌 경우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 말을 하지 못함 • 기침을 해도 기침 소리가 나지 않음 • 숨을 못 쉼 • 청색증이 생기고 의식 흐려짐	• 말을 함 • 기침하면 기침소리가 남 • 호흡이 가능 • 의식이 온전함

바로 구급차를 부름

-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을 속히 방문
-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아래의 응급처치 시행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2017).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 개발 : 유치원·어린이집용

(1) 1세 미만 영아가 완전히 기도가 막힌 경우(의식이 있는 경우)

① 머리를 고정하고 등의 가운데를 5번 세게 침
②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바로 아래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5번 누름
③ 입을 열어 이물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나오지 않았으면 ①② 과정을 반복하고 의식을 잃으면 심폐소생술 실시

(2) 1세 이상 아이가 완전히 기도가 막힌 경우(의식이 있는 경우)

① 등 두드리기 시행(5회)

② 아이의 뒤에 서서 아이의 허리를 팔로 감쌈 ③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그 손의 엄지를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둠 ④ 다른 한 손으로 감싸고 빠르고 강하게 위쪽으로 당겨 올림	하임리히법 (5회)

※ 입을 열어 이물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물이 배출될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하임리히법을 각 5회씩 반복함. 의식을 잃으면 심폐소생술 실시

MEMO

(8) 영아돌연사증후군

ZOOM—IN 사례보기

돌연사 증후군	만 0세 A는 우유를 먹고 트림을 한 후 잠이 듦. 얼마 지나지 않아 우는 소리가 들려 교사가 달래주고 다시 잠이 든 것을 확인.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을 깨울 준비를 하던 교사가 A를 깨우려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차가웠음. 교사는 A를 일으켜 등을 두드리고 119에 신고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함.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는 사망

사고특징과 안전한 보육환경관리방안

정의	• 영아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영아돌연사(SUID: Sudden Unexpected Infant Death)라고 함 • 그 중 영아돌연사(급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임상기록의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조사 후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1세 미만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의 ※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시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음
사고 특징	•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음
보육 환경 관리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해야할 일(To Do)]** • 수유 후 트림시키기 • 영아를 재울 때 등을 바닥에 대고 천장을 보도록 바로 눕힘 • 영아가 수면하는 바닥의 면이 단단해야 하며 덥지 않게 함 • 어둡지 않게 하여 수면 중인 영아의 얼굴을 살필 수 있어야 함 • 이불을 덮지 않거나 가벼운 이불로 영아의 가슴까지만 덮게 함(머리/얼굴을 덮지 않도록 함) • 영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함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하지말아야 할 일(Not To Do)]** • 영아가 자고 있는 주변에 위험한(푹신한) 물건을 두지 않음 • 영아와 같은 침대에 자거나 바로 옆에 눕지 않도록 함 • 흡연과 간접흡연 금지/방지

응급처치

1	2	3	4
사고상황 인지	119신고 및 응급처치	보호자연락 및 의료기관 이송	사고보고
영아 상태 확인 (호흡 및 의식)	119신고 후 심폐소생술 실시	보호자연락 후 사고상황설명 사고현장기록 의료기관 이송	지자체 보고 및 공제회 사고접수

심정지(심폐소생술)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보다 질식성 심정지가 훨씬 흔하기 때문에 영유아 소생술에서는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함. 소아 기본소생술의 경우 영아와 만 8세 미만의 소아에게 모두 적용

※ 영아_만 1세 미만의 아기 / 소아_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소아 기본소생술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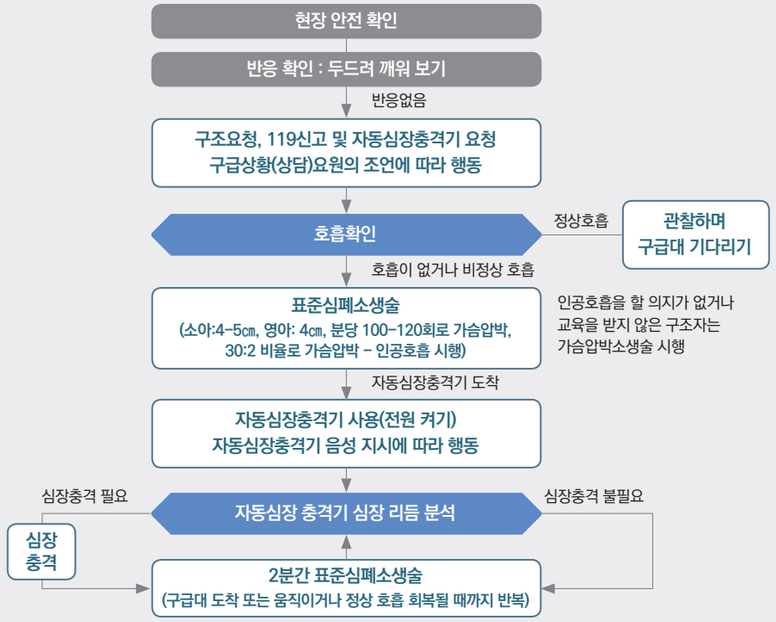

출처 :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일반인 구조자를 위한 소아 기본소생술 참고표]

구분	내용
소생술이 필요한 호흡	호흡이 없거나 심장정지 호흡(헐떡임)을 보일 경우
가슴압박	• 압박 위치: 영아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 소아는 흉골 아래쪽 1/2 • 압박 깊이: 가슴 전후 두께의 최소 1/3 이상 압박(영아 4㎝, 소아 4-5㎝) • 압박속도 : 분당 100-120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	• 가슴압박 : 인공호흡 = 30:2 •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받지 못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소생술 시행 •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가슴압박소생술 시행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는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
심장 리듬 분석	가슴압박을 중단한 상태에서 시행
심장 충격 후 심폐소생술	심장 충격 후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

출처 :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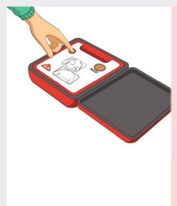

❶ 전원 켜기
-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전원을 켬

❷ 두 개의 패드 부착
- 유아의 경우 우측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좌측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밑에 붙임. 영아의 경우 좌측 패드는 가슴 앞에, 우측 패드는 등에 부착

❸ 심장 리듬 분석
-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함

❹ 제세동
- 분석결과 '쇼크가 필요하다' 라는 신호가 나오면 자동으로 충전이 됨. 충전이 완료되기 직전에 다시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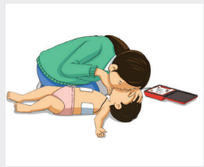

❺ 즉시 가슴압박 시작
- 쇼크가 끝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2분 후 자동으로 다시 분석 단계를 시작함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9). 어린이집 안전가이드북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리절차

가. 사고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소통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 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14]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사고보고서의 내용은 사고일자, 사고발생장소, 사고당시 활동내용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Ⅲ-10〉 사고보고서

어린이집명 (유형)	(　　) * 전담지정종류 포함		인가일	최초: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어린이집현황	정원(　)명, 현원(　)명, 보육교직원(　)명				
반별 현황	0세반(　)명 1세반(　)명 2세반(　)명 3세반(　)명 4세반(　)명 5세반(　)명 시간제(　)명 방과후(　)명 야간연장(　)명 24시간(　)명				
사고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자	년 월 일	목격자명		사고시간	오전/오후
사고 당시 원장 및 담임교사 근무상황					
부모연락사항					
연락시간	오전/오후	119신고 여부	☐ 안함 ☐ 신고함(오전/오후 시)		
사고발생 장소	☐ 수송중 ☐ 견학중 ☐ 실외놀이장 ☐ 실내놀이실 ☐ 화장실 ☐ 복도 ☐ 주방 ☐ 대근육활동실(유희실) ☐ 교사실 ☐ 식당 ☐ 계단 ☐기타(　　)				
사고당시 활동내용	☐ 목욕 및 배변시간 ☐ 교실활동 ☐ 계단오르내리기 ☐ 실내자유놀이 ☐ 점심/간식/수유시간 ☐ 실외자유놀이 ☐ 계획된 실외놀이 ☐ 놀이시설 설비 ☐ 물놀이 ☐ 견학 ☐ 낮잠 ☐ 기타(　　)				
상해를 입은 시설 설비	☐ 오르기시설 ☐ 평균대 ☐ 크롤(기어나가는 시설) ☐ 장애설비 ☐ 현관문/교실문 ☐ 실외고정물 ☐ 회전대 ☐ 놀이집 ☐ 시소 ☐ 미끄럼틀 ☐ 그네 ☐ 바퀴달린 탈 것 ☐ 바퀴달린 장난감 ☐ 잘 모르겠음 ☐기타(　　)				
상해의 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물림 ☐ 찔림 ☐ 식중독 ☐ 기타 중독 ☐ 호흡곤란 ☐ 기타(　　)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서식 Ⅱ-11 영유아 사고보고서

14)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을 보고

MEMO

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사고 처리 절차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의 사고처리 절차표에 따라 사고접수를 하도록 함

〈표 Ⅲ-11〉 사고 처리 절차표

1 사고발생 → 2 사고보고 → 3 사고접수 확인 → 4 청구서류 제출

5 공제급여 산정 → 6 공제회지급 → 7 종결

〈표 Ⅲ-12〉 절차 상세내용

1	사고발생	• 사고발생
2	사고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후 사고보고서 작성 • 안전공제회(좌측메뉴) - 사고보고
3	청구서류확인	• 사고보고 시 별도로 안내된 사고별 청구서류 확인
4	청구서류제출	• 팩스, E-mail, 우편을 통해 제출
5	공제급여산정	• 결정통지 ※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6	공제회 지급	• 공제급여 수령
7	종결	• 완료

보육통합시스템(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메뉴〉 안전공제회〉 사고보고를 통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면 청구서류 제출에 관한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 대표전화(콜센터) 1600-06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장내용으로 알아보는 공제용어

주요내용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공제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사고 처리 과정 중, 도움이 필요할 경우 콜센터(1600-0611) 이용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요 공제상품인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공제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안전사고의 경우,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공제 상품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사고내용이 다양하고 책임소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사고접수 후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상해담보란?**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배상책임담보란?** 어린이집의 보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혀 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공제

대인 · 대물배상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①가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대인), 재산상(대물)의 상해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②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한도액 내에서 보상

보상 한도	대인배상 : 1인당 5억원/ 1사고당③ 30억/ 자기부담금④ 10만원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용어 설명	① 피공제자 :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② 배상책임 :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를 말함 ③ 1회의 사고 :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 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봄 ④ 자기부담금 :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시, 공제 계약상 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회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영유아상해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①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②가 입은 신체 상해③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보상 한도	치료비의 100%/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후유장해④ 시 8,000만원
용어 설명	① 보육활동 중 1. 어린이집내외 일과중 2. 기타 통상적인 보육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반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등·하원 중 ② 피공제자 :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이 위탁을 맡아 보육 중인 아동 ③ 상해 :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④ 후유장해 :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은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

돌연사증후군(기본)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의 경우' 한도액 내에서 보상

※ 돌연사증후군특약 별도(보상한도: 영유아배상담보 4,000만원 포함하여 1억원)

보상 한도	1인당 4,000만원

음식물배상책임

어린이집 내에서 제조(조리)되어 공급된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는 손해를 한도액 내에서 보상

보상 한도	1인당 5억원/ 1사고당 3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설명	어린이집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음식물 공급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해야 함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그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사고조사 후 보상이 진행되므로 신속히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여 초기조치(급식 중단, 보존식 및 현장 보존, 지자체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함

형사소송지원금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민사책임①과 형사책임②이 원장(대표자, 보육교직원)에게 발생함

보상 한도	1사고당 500만원
용어 설명	① 민사책임 : 손해배상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으로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 향후성형수술비, 교통비 등이 해당.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에 따른 보상은 공제회에서 처리 및 지급 ② 형사책임 : 사고에 대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경찰, 검찰, 법원에서 판단하게 됨. 무혐의, 금고, 벌금, 실형 등으로 선고됨

기타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특약(대위권 포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집기/화재배상특약), 풍수해특약, 재난사고위로금 특약 상품 가입 및 문의 시에는 TEL 1600-0611 이용이 가능함

✲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용어 ✲

용어	정의
골절	• 외력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것을 지칭하며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끊어지는 상태
괴사	• 생체 안에서 국소적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것을 말함. 괴사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손상되는 허혈성(무혈성) 괴사, 독소나 화학약품에 의한 괴사, 열이나 방사선 등 물리적 원인에 의한 괴사 등이 있음
교상	• 사람이나 동물의 치아에 물리거나, 이로 인해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반흔	•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피부 위에 남는 변성 부분
아탈구	• 관절 상호면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하여 관절면의 일부는 접촉하고 있지만 스치는 상태
열상	• 외부의 자극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
염좌	• 인대가 다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벼운 손상(인대의 부분 파열, 신연)에서부터 완전 파열까지의 다양한 정도의 인대 손상을 모두 포함
자상	• 끝이 예리한 물체(못,창 등)에 의해 피부가 찔려서 입는 상처
절상	• 끝이 예리한 물체(칼,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입는 상처
찰과상	• 마찰에 의하여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치아파절	• 외상에 의해 발생한 치아 경조직의 손상
타박상	• 외부의 힘(충돌 등)이 피부의 넓은 면에 가해질 때 생기는 상처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cdc.go.kr)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Ⅳ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1.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돌아보기
2. 사례공유 · 이야기 나누기

Ⅳ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들어가기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예방적 측면과 대응적 측면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수많은 보호자들이 안전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과 대응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상담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원장들이 경험한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도록 한다.

1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돌아보기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설비·교육 등 많은 준비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영유아 사고 발생 후에는 영유아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어린이집과 보호자간의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핵심적 내용임. 다음 안전사고 사례를 통하여 원장-보호자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보며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 사고 자체를 객관화시켜 사고를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ZOOM—IN 사례보기

13개월 아이 손 '2도 화상' … 어린이집 원장의 거짓말

사고 사례 ❶

13개월 영아가 원장이 잠깐 아이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인 텀블러에 손을 넣음. 텀블러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아이를 달래며 20분 후에 가까운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감. 병원을 다녀온 후 30분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대형병원에 감

※ 본 내용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세부 상황 및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원장 관점

잠시 자리를 비움
▼
돌아와보니 영아의 손이 빨갛게 부어있음
▼
영아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옆 반 교사를 부름
▼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아이를 20분 가량 달램
▼
가까운 가정의학과로 감
▼
가정의학과에서 의사의 진단이 대형병원(화상외과)으로 갈 것을 권유
▼
보호자에게 연락 후 대형병원(화상외과)으로 이동
▼
대형병원 화상 2도 진단 후 사태 수습
▼
보호자와의 분쟁

보호자 관점

어린이집에 보냄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
"OO이가 조금 다쳤어요~ 많이 다친건 아니고 국에 손을 담가서 데었습니다. 가까운 가정의학과에는 다녀왔는데 '수포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아이 손을 차갑게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대형병원(화상외과)으로 가볼게요"
▼
대형병원으로 이동
화상외과 의사가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근육과 피부가 다 손상될뻔했다"
▼
사실확인을 위해 CCTV열람 요구
▼
확인 후 경찰에 고소

들여다보기 : 원장, 보호자 관점에서 살펴보기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돌아왔는데 영아가 울고 있어 너무 당황스러움 • 영아가 진정되지 않고 많이 울자 옆 반 보육교사에게 도움을 요청 • 보육교사도 우는 영아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가까운 병원에 가자는 결론이 나왔고, 가정의학과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유하자 더 당황스러웠음 • 보호자에게는 전화해야한다는 판단이 들어 전화했지만 최대한 놀라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 가벼운 화상정도로만 설명을 드림	• 갑작스레 걸려온 어린이집 원장의 전화를 받았고,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당황함 • 바로 병원으로 감 • 병원에서 아이의 손을 육안으로 봐도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의사가 늦게왔다고 이야기하자 화가남 • CCTV열람을 하니 국에 데인 것이 아니고 원장의 뜨거운 커피여서 더욱 화가 남

돌아가기 : 안전사고 발생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 뜨거운 커피를 보육실 안으로 들고가지 않음 •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리를 비울 상황에는 옆 반 보육교사에게 미리 말해둠 • 사전에 작성한 비상연락망에는 화상 전문병원의 위치와 번호도 명시해 놓음 • 영아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을 경우 1차 응급처치 시행 ※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이송 • 안전사고에 대해 알리는 보호자와의 통화 시 사고에 대해 정확하게(가급적 육하원칙) 당시 상황과 사고 정도에 대해 알림 • 사고 수습 후 사고로 인하여 놀랐을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챙김	• 내 아이의 사고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시, 가급적 흥분하지 않고 통화함 • 사고 수습 후 원장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에 관하여 자세히 듣기 • 추후 영아의 회복을 위하여 병원 등 치료를 우선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협의

ZOOM—IN 사례보기

적절한 응급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왜 화가 나신거죠?

사고 사례 ❷

A유아가 놀이 중 목을 움켜쥐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를 발견한 교사가 응급조치(하임리히법)를 시행하여, 목에 걸린 사탕을 빼냄. 이 후 하원 중 A유아의 보호자가 원장을 불러 A유아의 피부와 눈에 실핏줄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무엇인지 물어봄. 원장은 담임교사를 불러 보호자 앞에서 설명을 같이 들음

※ 본 내용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세부 상황 및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점

놀이 관찰 중 A가 목을 움켜쥐고 숨이 막힌 것 같아 달려감
▼
적절한 응급조치로 사탕이 목에서 빠져나왔고, A에게 사탕이 어디서 났는지 물음
▼
하원시간, 남은 유아를 위하여 그림책을 읽어주던 중 원장님의 호출이 옴
▼
A유아의 보호자께서 얼굴과 눈의 실핏줄에 관하여 묻자 응급조치 시행한 것을 말씀드림
▼
보호자가 흥분하셔서 원장님이 보호자와 상담실로 감
▼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나 화가나신 상태로 보호자께서 유아와 함께 돌아가셨고 원장님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림

보호자 관점

어린이집에 보냄
▼
하원 시 보호자를 향해 달려온 유아. 유아의 눈이 빨갛고 피부에 핏줄이 많아 자세히 들여다봄
▼
유아가 "사탕이 목에 걸려서 선생님이.." 라고 말해서 원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쭈어봄
▼
담임교사가 A의 목에 사탕이 걸려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말함
▼
큰 사고인데 말을 해주지 않아 화를 냄
▼
상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담당교사가 A가 괜찮다고 말했으며 육안상 괜찮아보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함
▼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심쩍어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날 CCTV열람 요구

들여다보기 : 원장, 보호자 관점에서 살펴보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자
• 자유놀이 중인 유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A유아가 기도가 막힌 것 같아 하임리히법을 시행 • 기도에서 사탕이 나와 사탕이 어디서 났는지 물으니 전날 가족과 갔던 음식점에서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함 • 이후 유아의 상태를 지켜보며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았고, 괜찮다고 함 • 하원 후 원장님께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함 •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던 중 원장님께 호출이 왔고 A유아의 보호자가 화를 내는 상황이라 당황함 • 상담실에서 보호자와 유아가 괜찮다고하여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았음을 설명함	• 하원 중 유아의 눈이 빨갛고 핏줄이 많은 것을 확인함 • 담임교사가 보이지 않아 원장님께 A의 상태에 대해 물음 • 원장님은 해당사항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서 담임교사를 호출함 • 교사로부터 기도에 사탕이 걸려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유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A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핏줄이 터질 만큼 위험한 상황 이었음에도 바로 알려주지 않음에 화가남 • 집으로 돌아와 더욱 화가 나서 뒷날 CCTV 확인

돌아가기 : 안전사고 발생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자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을 적기에 시행 •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중도가 높을 경우 원장이나 안전관리책임관을 호출 • 사고 수습 후 보호자에게 전화로 바로 알림 • 유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급적 처치 후 내원 • 본인의 판단으로 위중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안전관리책임관에게 알려 사고를 수습하고 남은 유아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아가 어린이집에 개인적 물건(놀잇감,사탕 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함 • 유아의 사고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시, 가급적 흥분하지 않고 통화 • 하원 시 유아가 다투었거나 어린이집에 관한 부정적 의견을 말할 시, 흥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면담신청을 통하여 어린이집이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함 • 사고로 인한 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협의

2 사례 공유 - 이야기 나누기

우리 원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로 인하여 보호자, 보육직원과의 갈등 사례를 적어보고, 흐름-관점-사고발생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며 추후 사고 발생 시 다양한 갈등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함

ZOOM—IN 사례보기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토의 후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

ZOOM—IN 원내 자율 교사연수

우리 원에서 겪은 안전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해결방안 및 대처법 등 이야기 나누기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V 어린이집과 가정 안전 연계

1.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 필요성
2. 보호자·어린이집 간의 협력 내용
3. 안전한 가정 환경

V 어린이집과 가정 안전 연계

들어가기

영유아 안전사고는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보호자의 안전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자는 안전한 환경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지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외에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가정의 안전한 환경 등 안전과 가정연계에 대해 알아보며,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와의 상호 간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 필요성

영유아의 안전교육은 가장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기술과 태도의 측면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과 어린이집과의 상호 긴밀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영유아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의 역할 중 하나이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안전교육을 해야함. 영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에서의 안전교육보다도 중요한 영역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2021)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와 상호협력해야 함을 명시함

2 보호자·어린이집 간의 협력 내용

영유아 안전사고는 영유아 주변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의 안전민감성에 영향을 받음. 따라서 영유아 주변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은 안전한 환경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지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자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요구됨.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보호자 역할을 제시하여 부모교육의 효과를 강화해야 함

ZOOM—IN 사례보기

소통과 참여

-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오리엔테이션 참여는 필수
-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운영안내서를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고 동의해야 함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배부되는 운영안내서, 가정통신문, 안내문 등을 꼭 읽고 확인하면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됨
- 어린이집 정기 부모 상담에 꼭 참여하여 어린이집과 영유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

- 영유아의 경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자가 영유아의 건강상태, 관심사 등을 알림장에 충실히 기록하여 주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 대부분의 영유아는 함께 지내는 동안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게 됨. 영유아기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음. 그러므로 영유아 간의 갈등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개선을 위한 의견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명으로 제안해주어야 맥락과 경위를 알 수 있어 반영할 수 있음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어린이집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ZOOM—IN 사례보기

안전한 인계

- 등원 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영유아는 동행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함
- 하원 시 영유아들끼리 놀게 하거나 보호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주의 깊은 안전관리와 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함
- 하원 시 보호자의 상태(음주 상태, 미성년자 등)가 부적절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인계할 수 없음
- 보호자 외 타인이 하원을 담당할 경우 이름, 인상착의, 관계 등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안전한 인계가 이루어짐
- 등·하원 시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통학 차량 규정에 동의하며, 영유아를 직접인계(등원)
- 하원 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지정된 보호자가 미리 나와서 영유아를 맞이해 주면, 통학차량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보호자 안전수칙(통학차량 시간·장소 준수, 직접인계, 영유아보호)

ZOOM—IN 사례보기

정보의 제공

- 입소 시 식품 알레르기, 약물부작용, 기타 건강상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입소신청서, 귀가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함
- 보호자가 고지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 (예: 경기, 과거 질병, 특이체질, 알레르기, 낮잠 습관* 등)

  *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낮잠 습관에 대한 정보(수면리듬, 패턴, 특이사항 등)를 어린이집에 제공
- 이사 등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퇴소해야 할 경우, 한 달 전(정확한 날짜)에 어린이집에 알려주어 정해진 퇴소절차를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고 다음 대기자의 입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함
- 약물 투약은 보호자가 작성한 투약의뢰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투약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 따라서 보호자는 약물 투여에 대한 요청사항(증상, 용량, 용법 등)을 투약의뢰서에 기록하면, 어린이집으로부터 투약결과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등원 전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평소와 다를 경우(식욕부진, 기면, 호흡, 체온 등) 담임교사에게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을 꼭 알려주거나 어린이집과 논의하여 등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ZOOM—IN 사례보기

영유아 공중보건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어린이집은 단체생활이므로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는 바로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가정에서 돌봐주어야 함
  * 예) 수두, 수족구, 유행성 눈병, 농가진 등
- 보호자는 자녀의 개월 수에 맞추어 백신 종류 및 방법, 횟수를 확인하여 적절한 접종 시기에 맞추어 접종하는 것이 중요
- 보호자는 예방접종 후 영유아의 상태(발열 증상 등)를 예후 관찰하고 등원하며, 접종 후 영유아의 건강 이상으로 보육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증상(발열, 구토, 발진, 설사)을 참고하여 어린이집과 등원 여부를 논의해주기 바람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
  - 검사항목 :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 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 검진주기 : 총 7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 4~6개월 ② 생후 9~12개월 ③ 생후 18~24개월 ④ 생후 30~36개월 ⑤ 생후 42~48개월 ⑥ 생후 54~60개월 ⑦ 생후 66~71개월

기타 안내사항

- 하원 시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관련된 정보, 건강상태 등의 내용 확인과 영유아의 소지품 등을 챙긴 후 하원
- 하원 후에는 영유아의 개인위생과 청결(손발톱 깎기,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유지를 도와주도록 함
-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침구는 위생적 관리를 위해 개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보내주면 영유아가 자신의 위생적인 이불과 매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음
- 보호자 및 영유아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이 책임지기 어려움. 만일의 분실상황을 대비하여 영유아의 개인 소지품에 지워지지 않게 이름을 쓰고 영유아가 자신의 물건의 생김새와 이름을 숙지하도록 알려주고, 또한 고가의 물품 소지는 하지 않도록 함
- 휴가 또는 교육, 질병 등으로 담임교사의 부재가 생기면 해당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배치된 대체교사*나 다른 보육교직원 등이 직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담임교사와 같이 신뢰하며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
  * 대체교사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교사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보호자가 CCTV 확인을 위해 자료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
- 열람 요청 – 알람결정통지 – 열람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열람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9). 세이프그램(safegram) 부모교육 자료

ZOOM—IN 체크하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부모교육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됨

리플릿	강의안(PPT)	영상
보호자·어린이집 동행 길라잡이	세이프그램(safegram) 부모교육 자료	어린이집 안전 동행, 든든한 부모되기

3 안전한 가정 환경

한국소비자원 통계(한국 소비자원, 2020)에 따르면 영유아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호자는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다양한 유형을 인지하고 영유아에게 예방법 등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고사례 및 예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며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함

1. 방과 거실

구분	살펴보기 어떤 사고가 있나요?	조심하기 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약속하기 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
가구 안전 사고	영유아기에는 가구에서 추락하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 **떨어짐, 부딪힘**	☑ 유모차, 영유아용 의자의 안전벨트 확인 ☑ 영아용 침대의 프레임 높이 확인 ☑ 유아용 침대는 혼자 오르내릴 수 있는지 높이 확인 ☑ 가구 모서리에는 모서리 보호장치를 부착 ☑ 실내에서는 미끄럼방지 양말이나 양말 벗기 ☑ 벽에 걸린 물건, 책장이나 전자제품 등 고정여부 확인 ☑ 서랍장 내 무거운 물건은 아래칸으로 정리	☑ 유모차, 의자에 앉을 때 안전벨트를 하고, 의자에 깊숙이 앉기 ☑ 유모차, 의자를 흔들거리지 않기 ☑ 의자나 테이블 이에 올라가지 않기 ☑ 냉장고, 서랍장, 책장에 매달리지 않기 ☑ 침대, 책상, 식탁을 세게 흔들지 않기 ☑ 뛰지 않고 걷기
놀잇감 안전 사고	방과 거실에서 대부분의 놀이가 진행되는 만큼 놀잇감에 대한 사고를 조심 **이물질삼킴, 긁힘 · 찔림**	☑ 자녀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 치우기 (직경 3.5㎝이하 작은 물건(영아), 의약품, 화학물질, 전열기구, 칼, 가위 등) ☑ 모든 놀잇감의 깨짐, 균열 등 정기적 확인 ☑ 입에 넣는 놀잇감은 매일 세척 ☑ 큰 놀잇감의 고정 여부 확인 ☑ 끈 리본 등으로 놀이할 때 관찰 ☑ 놀이가 끝나면 꼭 정리 ☑ 자녀와 함께 놀이하며 수시로 위험요소 제거	☑ 고장나거나 깨진 놀잇감은 치우기 ☑ 놀잇감을 던지거나 발로 밟지 않기 ☑ 놀잇감을 입에 넣지 않기 ☑ 끈이나 가위 등을 사용할 때 부모님께 허락받기 ☑ 놀이가 끝나면 정리하기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보호자용	유모차, 영유아용 의자 사용 시 안전벨트 확인	☐	☐
	뾰족한 모서리에는 모서리 보호대 부착	☐	☐
	바닥에 전선 등 걸려 넘어질 요소가 없는지 확인(전선정리함 사용)	☐	☐
	자녀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의약품, 화학물질, 칼 가위) 점검	☐	☐
	모든 놀잇감의 깨짐, 균열 등 안전한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자녀용	나는 유모차나 의자가 흔들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	☐
	나는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	☐
	나는 냉장고, 서랍장, 책장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	☐
	나는 놀잇감을 던지거나 발로 밟지 않았어요	☐	☐
	나는 놀이가 끝나면 정리했어요	☐	☐

MEMO

2. 욕실

구분	살펴보기 어떤 사고가 있나요?	조심하기 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약속하기 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
공간 안전 사고	욕실 내 공간에서는 물기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 **미끄러짐**	☑ 샤워 부스나 욕조에 영유아용 손잡이 설치 ☑ 욕실 내에 영유아용 발판 및 변기 시트 비치 ☑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 사용 ☑ 욕실 바닥에 물기는 수시로 확인 후 제거 ☑ 욕실 문의잠금 장치는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하기	☑ 욕실 안에서는 뛰지 않기 ☑ 세면대에 매달리지 않기 ☑ 욕실 바닥에 물이나 비누거품 뿌리지 않기 ☑ 욕실을 사용할 때 보호자에게 말하고 들어가기
온수 안전 사고	온수로 인한 사고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화상**	☑ 세면대, 샤워기 등 수전에 온수조절장치 설치 ☑ 자녀를 씻기기 전 보호자는 미리 손으로 수온을 체크 ☑ 가급적 온수는 욕조나 세면대에 받아서 사용	☑ 온수조절장치를 만지지 않기 ☑ 목욕물을 받을 때에는 욕조에 가까이 가지 않기 ☑ 샤워기 줄로장난치지 않기
기타 안전 사고	화학물질 중독, 전기감전, 익사사고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화학물질 중독, 감전, 익사**	☑ 락스, 세제 등 화학제품은 안전 마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본 용기에 그대로 담에 보관하기 ☑ 욕실 내 전기제품및 화학제품 등은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 물을 채운 욕조에 자녀를 혼자 두지 않기 ☑ 목욕이 끝난 후에는 물을 반드시 버리기 ☑ 평소에 변기 뚜껑 닫아 두기	☑ 락스, 세제 등 화학제품을 만지거나 먹지 않기 ☑ 물이 묻은 손으로 욕실 내 전선이나 콘센트 등을 만지지 않기(헤어 드라이기, 전기면도기 포함) ☑ 욕조 안에서 점프하거나 심하게 장난치지 않기 ☑ 변기사용 후 뚜껑 닫기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보호자용	욕실 바닥이나 욕조에 미끄러운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미끄럼방지 제품 사용)	☐	☐
	영유아용 발판 및 변기 시트 비치하기(자녀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	☐
	세면대, 샤워기 등 수전에 온수조절장치 설치하기	☐	☐
	청소도구 및 화학제품(락스, 세제 등) 은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	☐
	욕실 내 전기제품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	☐
	물이 있는 욕조 안에 자녀를 혼자 두지 않기	☐	☐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자녀용	나는 욕실에서 점프하거나 뛰지 않았어요	☐	☐
	나는 욕실 내 화학제품(락스, 세제 등)을 만지지 않았어요	☐	☐
	나는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았어요	☐	☐
	나는 전선이나 콘센트를 물이 묻은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	☐
	나는 변기를 사용하고 뚜껑을 닫았어요	☐	☐
	나는 욕실 이용 후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	☐

3.주방

구분	살펴보기 어떤 사고가 있나요?	조심하기 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약속하기 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
화상 사고	영유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해 주방기기나 뜨거운 음식에 의해 쉽게 화상을 입음 **화상**	☑ 뜨거운 조리 도구는 식탁에 올려놓지 않기 ☑ 손잡이가 긴 냄비는 손잡이를 가스레인지 안쪽으로 돌려놓기 ☑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 잠그기 ☑ 주방 근처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 놓지 않기 ☑ 주방기기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주기 ☑ 주방기기(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등)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콘센트에서 플러그 뽑기 ☑ 정수기 온수는 잠금장치해 놓기	☑ 뜨거운 국이나 물 만지지 않기 ☑ 가스레인지 불가까이에서 놀지 않기 ☑ 가스레인지 점화장치 만지지 않기 ☑ 증기가 나오는 밥솥에 가까이 가지 않기 ☑ 주방기기(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등)의 줄 잡아당기지 않기 ☑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 포크 등 뾰족한 물건을 찔러 넣지 않기
외상 사고	영유아는주방가구, 조리기구로 인한 외상을 입을 수 있음 **끼임·부딪힘, 찔림·베임**	☑ 조리용 가위는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 ☑ 날카로운 물건은 위험한 물건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싱크대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 끼지 않도록 하기	☑ 날카로운 물건 만지지 않기 ☑ 싱크대 문으로 장난치지 않기 ☑ 주방 서랍장에 매달리지 않기
기타 안전 사고	그 외 냉장고 자석 등 이물질 삼킴 사고 등이 발생 **삼킴**	☑ 냉장고에 붙여 놓는 자석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두고 사용 ☑ 냉장고 자석은 삼키면 위험한 물건임을 알려주기	☑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및 모든 자석은 입에 넣지 않기 ☑ 떨어진 자석은 주워서 보호자에게 주기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보호자용	뜨거운 조리도구(냄비, 프라이팬 등)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	☐
	가스레인지 사용 후 가스밸브 잠금 확인하기	☐	☐
	주방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기	☐	☐
	정수기 온수는 잠금장치 해놓기	☐	☐
	날카로운 물건(칼, 가위 등)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	☐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	☐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자녀용	나는 주방에서 놀이하지 않아요	☐	☐
	나는 주방기기(전기밥솥, 전지주전자, 토스트기 등)를 만지지 않아요	☐	☐
	나는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아요	☐	☐
	나는 싱크대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잡아당기지 않아요	☐	☐
	나는 자석을 입 속에 넣지 않아요	☐	☐

4. 베란다(발코니) 및 창문

구분	살펴보기 어떤 사고가 있나요?	조심하기 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약속하기 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
창문 안전 사고	베란다(발코니)사고 대부분이 창틀이나 유리문으로 인해 발생 **끼임, 질식**	☑ 문닫힘 방지장치 혹은 끼임 방지장치 설치 확인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의 문과 창문 잠금 장치 설치 ☑ 세탁기 문 잠금장치 확인, 빨래 건조대 모서리 관리, 깨진 화분 치우기 등 베란다 물품 안전관리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블라인드 선을 묶어 두고 풀리지 않도록 관리	☑ 문 틈이나 창문 틈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조심 ☑ 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 ☑ 문이나 창문에 매달리지 않기 ☑ 잠금장치가 있는 문과 창문을 열고 닫을 경우,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 ☑ 커튼이나 블라인드 뒤에서 장난치지 않기
추락 안전 사고 등	베란다(발코니)는 추락사고는 물론 미끄러운 바닥재로 인해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 **추락, 넘어짐**	☑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나 물건을 두지 않기 ☑ 방충망이 튼튼하고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 ☑ 난간의 높이가 낮거나 난간 틈이 넓은지 확인후 조치하기(난간 높이 120㎝이상, 난간 간격은 10㎝이하) ☑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또는 매트 등을 설치하기	☑ 난간에 매달리거나 난간 위로 올라가지 않기 ☑ 베란다(발코니) 창가에 기대지 않기 - 특히 방충망에 기대면 방충망이 떨어져나갈 수 있어 위험 ☑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놀잇감 등은 꺼낼 때 보호자에게 요청하기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보호자용	베란다(발코니)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기	☐	☐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블라인드 선을 정리	☐	☐
	베란다(발코니)에 영유아가 밟고 미끄러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기	☐	☐
	방충망이 튼튼하고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	☐	☐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자녀용	나는 문이나 창문, 난간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 않았어요	☐	☐
	나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뒤에서 장난치지 않았어요	☐	☐
	나는 선반 위 놀잇감을 꺼낼 때 도움을 요청했어요	☐	☐
	나는 의자 등을 딛고 올라서서 창 밖을 보지 않았어요	☐	☐
	나는 베란다 창, 난간, 방충망에 기대지 않았어요	☐	☐

5. 실외놀이터

구분	살펴보기 어떤 사고가 있나요?	조심하기 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약속하기 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
시설물 이용 안전	실외놀이터에서 시설물 이용 중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므로 주의 **추락, 친구와 부딪힘**	☑ 놀이시설 표지판(사용 연령 범위, 안전수칙, 관리주체,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등) 확인 ☑ 놀이터로 나가기 전 자녀의 옷차림 확인(신발끈, 끈 달린 모자 등) ☑ 높은 곳에 올라간 경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 자녀가 친구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중지시키기	☑ 놀이터로 나가기 전 보호자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이야기 나누기 ☑ 실외활동하기 편하고 안전한 옷, 신발 착용하기 ☑ 놀이 기구 이용 시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기 ☑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경우 차례를 지켜 놀이하기 ☑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바로 보호자에게 알리기
공간 안전 사고	모래 놀이터 및 놀이터 주변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모래 놀이터, 동물물림, 나뭇가지에 찔림, 실종**	☑ 자녀와 안전한 모래 놀이터 이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놀이터 주변 환경을 미리 살펴보며 안전점검(벌집, 동물, 뾰족한 나뭇가지 등) ☑ 자녀가 놀이터 주변을 산책할 경우 보호자가 함께하기 ☑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주변 의료기관 및 약국 알아두기	☑ 모래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모래 뿌리지 않기 ☑ 모래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을 비비지 않기 ☑ 이동 시 항상 보호자와 함께하기 ☑ 야외활동 중 만나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 실외 놀이를 마친 후 깨끗하게 손 씻기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보호자용	놀이터 주변 환경(파손된 기구, 웅덩이 등)이 안전한지 사전에 살펴보기	☐	☐
	놀이터 나가기 전 자녀의 옷차림(신발끈, 끈이 달린 모자 등) 확인	☐	☐
	놀이시설 표지판(사용 연령 범위, 안전수칙, 관리주체 등)확인	☐	☐
	놀이터에 자녀 혼자 두지 않기	☐	☐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주변 의료기관 및 약국 알아두기	☐	☐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자녀용	나는 차례를 지켜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했어요	☐	☐
	나는 놀이터 주변에서 위험한 것(유리조각, 뾰족한 나뭇가지 등)을 만지지 않았어요	☐	☐
	나는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지 않았어요	☐	☐
	나는 놀이터에서 놀이하다가 혼자서 멀리 가지 않았어요	☐	☐
	나는 놀이터에 다녀와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	☐

6. 차량 및 도로

구분	살펴보기 어떤 사고가 있나요?	조심하기 보호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약속하기 자녀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할까요?
승용차 안전	차량 안팎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사고, 손가락 끼임, 차량 갇힘 사고 등이 발생 **부딪힘, 끼임**	☑ 차량 주변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문 열고 닫기 ☑ 영유아를 성인의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타지 않기 ☑ 안전띠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 ☑ 주행 시 자동차 문을 잠금 상태로 해놓기 ☑ 잠깐이라도 영유아 혼자 차에 두지 않기 ☑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좌석 확인 ☑ 영유아에게 안전띠 사용 방법 및 주의점 알려주기	☑ 어린이는 자동차 뒷좌석(영유아보호용장구)에 앉기 ☑ 차에 타면 안전띠 착용하기 ☑ 주행 중 일어나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기 ☑ 자동차 문 함부로 열고 닫지 않기 ☑ 유리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 내밀지 않기
보행자 안전 사고	인도 보행 시, 주·정차된 차량 주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교통사고**	☑ 길을 걸을 때는 인도로 걷기 ☑ 아이와 함께 걸을 때는 아이를 인도 안쪽으로 걷게 하기 ☑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길에서는 항상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길을 건너도록 지도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른쪽에서 건너도록 하기 ☑ 차가 주·정차 된 곳에서는 놀지 않도록 하기	☑ 길을 걸을 때는 뛰지 않고 인도로 걷기 ☑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지 않기 ☑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기다리기 ☑ 신호등 초록 불이 켜지면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건너기 ☑ 주·정차 된 차 주변(앞,뒤, 옆, 밑)에서는 놀지 않기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보호자용	안전띠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
	주행 시에는 자동차 문을 잠금 상태로 해놓기	☐	☐
	아이는 성인의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타지 않기	☐	☐
	영유아와 함께 걸을 때는 아이를 인도 안쪽으로 걷게 하기	☐	☐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	☐
	차가 주·정차 된 곳에서는 놀지 않도록 하기	☐	☐

	우리집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해보아요	Y	N
자녀용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았어요	☐	☐
	나는 차에 타면 안전띠를 착용했어요	☐	☐
	나는 유리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았어요	☐	☐
	나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넜어요	☐	☐
	나는 차량이 주·정차된 곳에서는 놀지 않았어요	☐	☐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20). 우리집 생활·놀이 공간 안전한 가(家)? 부모교육 자료

MEMO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부록

1.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
2.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3. 미세먼지·오존 / 실내공기질
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및 보장내용

부록 1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

1. 소방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요약)

설비종류		설치기준
소화설비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1 이상으로 설치 가능 / 소화기수량산정 : 노유자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마다 1능력 단위 이상, 3.3kg 소화기 3능력 단위
	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600㎡ 이상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합 300㎡ 이상 600㎡ 미만
		바닥면적 합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無窓層) 의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포함)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단독형감지기	구획된 모든 실(소방시설법 및 영유아보육법)

2. 대상별 정기 안전점검 내용

구분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주기	주체	비용
소방	간이스프링클러 및 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년 1회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체	신청자
전기	일반용전기시설(용량 75㎾ 미만)			관할 전기안전공사	신청자
가스	도시가스	1종 보호시설(어린이집) ※ 월사용 예정량(1000㎥) 이상 시 실시/ 기준량 미달 시 의무 아니나, 지자체별 상이		관할 가스안전공사	신청자
	LPG	1종 보호시설(어린이집)			지자체별 상이

부록 2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주요내용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잠재적 위험 발견 시 수리 및 제거 등 정기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후된 시설물 교체와 소방, 전기 및 가스 등의 관리 등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꼭 점검해야 할 요소이다. 이 장에서는 소방, 전기, 가스 등에 관하여 다루도록 한다.

※ 본 ZOOM-IN ✓ 체크하기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온라인 컨설팅)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됨

1.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기

- 정의 :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투명 소화기케이스 등에 보관하여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 권장
- 압력게이지 및 사용연한(10년) 확인
- 보육실의 경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실마다 1개씩 비치하는 것을 권장
- 소화기 표지판 설치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소화기 등 정상관리상태(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인하였는가?	
▶ 소화기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33.3㎡(약 10평) 이상인 실에는 추가로 설치	
▶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 위치표지 부착하였는가?	
▶ 소화기 등 정상관리상태(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경과 여부) 확인하였는가?	
▶ 주방에 K급소화기 및 분말소화기를 설치하였는가?	
▶ 자동확산소화기 등 정상관리상태(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인하였는가?	

스프링클러 설비

- 정의 :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 화재 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물 금지
- 스프링클러 헤드작동 시에는 우산 모양으로 살수가 되므로 그 주변으로 전등 등으로 살수의 장애가 되는 부분은 있는지 확인
- 스프링클러 헤드 테두리(왕) 마감재료 탈락, 페인트 오염, 헤드와 천정마감부분 틈새가 있는지 확인
- 스프링클러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면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으로 관리 필요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유수검지장치의 밸브류 관리 및 접근성(물건 적치 포함)을 확인하였는가?	
▶ 헤드의 미경계구역, 헤드의 손상, 살수장애(헤드 주변 60cm 이내 공간 확보)의 주변을 확인하였는가?	
▶ 스프링클러 배관 압력, 파손, 결함, 누수, 부식, 보온처리를 확인하였는가?	

경보설비

화재 감지기

- 정의 :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음향 장치로 알리는 감지기
- 감지기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전기선으로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건전지)로 구분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각 실과 최상층 계단 천장에 설치
  (단,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면제)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소화재감지기 정상설치여부(가운데 최상단) 및 작동여부(미경계부분, 적응성)를 확인하였는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보육실,창고,복도 등 구획실 (150㎡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여부 확인(몸체 시험버튼 PUSH)	

〈최상층 계단 천장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상경보설비

- 정의 : 화재 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
- 발신기 수동조작버튼을 누르면 발신기 내의 지구경종과 수신기 상단의 주경종이 동시에 울림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발신기 정상설치와 작동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치표시등, 경종 음량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 정의 :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연기·불꽃을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 수신기는 동작, 점검이 쉬운 공간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수신기 정상 관리, 접근이 용이한가?	
▶ 수신기 작동여부(동작시험,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확인하였는가?	

피난설비

비상출구

- 정의 : 비상출구는 피난을 위해 설치된 출구를 말함
- 어린이집의 영유아는 키가 작기 때문에 비상출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여야하며, 바닥으로부터 50㎝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판을 설치
- 피난안내도 비치(양방향 대피, 소화기 위치,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등 명시)
  - 피난안내도 부착위치(각 층, 각 실) 및 규격(B4 이상 권장) 확인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비상출구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 거울, 교구장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
-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 내부에서 파괴가 가능하거나 열 수 있는 구조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가?	
▶ 비상대피 경로상 화기시설, 장애물 적치, 잠금 등 장애가 없는가?	
▶ 피난안내도에는 비상구 위치, 대피경로, 대피요령,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비상계단

- 정의 :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
- 계단의 구조, 피난용이성,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 2개 이상의 계단(실내·외)의 경우 계단은 통로나 복도로 연결되고 계단 참이나 입구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비상계단과 바닥은 영유아의 이용에 안전한가?	
▶ 비상계단은 통나 복도로 연결되고 계단 참이나 입구에 장애물이 없는가?	

피난기구

- 정의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
- 피난기구는 계단을 통한 양방향 대피가 어려울 공간에 설치하는 기구이며,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

구분	정의
미끄럼대	화재 또는 비상 시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치
구조대	(하강식 경사구조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며 대피할 수 있는 것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피난기구는 손상된 부분이 없는가?	
▶ 피난기구 주변의 장애물 제거와 사용방법이 게시되어 있는가?	

MEMO

2. 전기설비

전기 설비의 일반적 관리

- 어린이집 내 전기용품 사용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받은 KC제품을 사용
- 영유아 손에 닿는 부분에 노출된 전선이 없도록 배관 또는 몰딩을 이용하여 정리
- 바닥이나 문 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

콘센트

-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 : 발열 또는 검게 그을림 확인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도록 함
- 전기용품과 벽면 콘센트간의 거리 유지 : 전기용품과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 발열·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 콘센트 핀에 젓가락 등 쇠붙이, 장난감을 넣지 않도록 주의
-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으로 교체 사용
-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물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함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화장실, 탕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 근처에는 방적형 콘센트를 설치하였는가?	
▶ 어린이집 내 오래되고 노후된 콘센트는 없는가?	
▶ 멀티탭에 플러그를 문어발식 연결을 하지는 않았는가?	
▶ 안쓰는 콘센트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였는가?	
▶ 노후되고 꺾인 전선, 절연피복 탈락된 전선은 없는가?	

분전반

- 분전반 내부에는 차단기, 전선이 충전부와 연결되어 있어 감전 우려가 있으니 영유아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전면에 전기위험 표시판을 부착
- 분전반 내·외부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치움 ※ 벽지, 적재물 등으로 분전반을 가리지 않음
- 영유아의 머리 높이에 분전반 손잡이가 위치하고 있어 돌출될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임의 조작에 의해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배전·분전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분전반 내 각 실별, 전기시설별 명칭기입	
▶ 분전반함 앞쪽에 장애물은 없는가?	

3. 가스설비

ZOOM—IN 사례보기

주요 내용 및 활용 Tip

사고 사례

조리실에 불이 났어요

원아들의 간식을 만들기 위해 가스불에 기름을 끓이다가, 교재교구 정리를 위해 약 1~2분 정도 조리현장을 이탈함. 다시 부엌으로 가보니 달궈진 기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레인지 옆과 후드장치에 불이 타올라 응급조치로 진화작업을 함

Tip 조리시 조리현장을 가급적 이탈하지 않고, 급한 용무 시 다른 교직원에게 주시 부탁 / 주방에는 자동확산 소화기 및 분말소화기와 유류화재에 대비한 k급 소화기 함께 설치

가스설비의 일반적 관리

연료용 가스 종류

-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
  -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연료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면 위로 상승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0.5배 / 누출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 액화석유가스(LPG)
  - LPG는 주로 용기에 의하여 공급받는 가스로 프로판 및 부탄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바닥 등 낮은 곳에 고임
  - 가스무게 : 공기의 약 1.5배 / 누출시 특유의 가스냄새가 있으며 체류되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

ZOOM—IN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LPG 가스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 장치(사슬,띠), 시건장치 등을 확인하였는가? → LNG 도시가스는 가스관으로 가스가 공급되므로 용기가 없음	

자율 안전점검

- 사용 전 : 환기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 조치
  - 가스레인지 등 가스 연소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종이, 스프레이 통 등)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치우도록 함
- 사용 중 : 점화 확인
  - 점화할 때에는 파란 불꽃이 붙었는지 점화여부를 확인
  -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
- 사용 후 : 밸브 잠금
  -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연소기 콕과 중간밸브를 모두 잠금
  - 휴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의 경우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밸브를 잠금
- 평상 시
  - 고무호스 및 압력조정기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교환
    ※ 권장사용기간 : 고무호스 7년, 압력조정기 6년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막음 조치 여부 확인
  - LPG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빗물이나 직사광선 피하여 보관 여부 확인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연소기, 배관, 고무호스, 가스렌지 호스 연결부분 등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수시로 비눗물과 가스냄새 여부로 확인하였는가?	
▶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입상밸브 및 건물 내외부의 금속배관에 부식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녹 제거 및 부식방지도장(페인트) 조치하였는가?	

가스 안전 설비

- 타이머콕 : 가스사용 시간을 설정하여 시간이 경과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잠가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등)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함
- 과열방지 장치 장착 가스레인지 : 조리기구(냄비, 솥 등) 표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온도(260℃) 이상이 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내장된 가스레인지

〈타이머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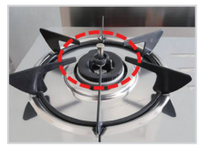

〈과열방지 장치 장착 가스레인지〉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가스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이머콕, 과열방지장치,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설치하였는가?	

4. 석면

어린이집 석면관리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 조사의무대상: '09. 1. 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ZOOM—IN ☑ 체크하기

점검 내용	체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는가?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면관리 실태조사에 입력하였는가?	

어린이집 공간 내 석면 함유물질 예시

천장재		바닥재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텍스의 훼손된 부분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경우	▶바닥이 찢어진 경우	▶바닥면이 많이 드러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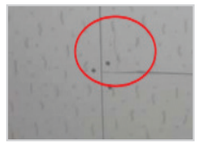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석면 관리 매뉴얼

부록 3 미세먼지·오존 / 실내공기질

주요내용

미세먼지, 오존 등의 발생 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단계별로 관리체계 및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영유아의 건강상 위험을 최소화한다. 미세먼지에 이어 오존 예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예보를 통해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실내공기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이하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어린이집용](보건복지부, 2020)을 참고하여 작성됨

1. 미세먼지·오존

가. 어린이집 미세먼지· 오존 대응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을 이행해야 함

관련 내용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및 오존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_{10} 81㎍/㎥ 또는 $PM_{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나.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어린이집)

단계	대응요령
평상시 사전준비 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75㎍/㎥, $PM_{2.5}$ 35㎍/㎥) 준수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_{10} 81이상 또는 $PM_{2.5}$ 36이상 1시간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_{10} 150이상 또는 $PM_{2.5}$ 75이상 2시간지속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_{10} 300이상 또는 $PM_{2.5}$ 150이상 2시간지속 출처 : 보건복지부(2020).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	•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다. 고농도 오존 대응요령(일반)

단계	대응요령
사전준비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4.15~10.15)	• 민감군 사전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 – 만성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 민감군은 "보통" 농도(0.031~0.09 ppm)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주의 필요 • 비상연락망 구축 • 담당자에게 오존 대응요령 교육 • 휴식공간 확보 및 실외활동 조정 계획 수립 • 오존 예보 및 농도 수시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에어코리아), 모바일앱(우리동네대기정보)
나쁨 0.09 ppm 초과	• 오존 대응요령 교육(당일 "나쁨"이 예보된 경우 포함) • 민감군 건강상태 수시 확인
주의보 (매우나쁨) 0.12 ppm 이상 * 매우나쁨 : 0.15 ppm 초과	• 주의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알림 • 영유아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실외활동 최소화·중지
경보 0.3 ppm 이상 * 중대경보 0.5 ppm 이상	• 경보 발령 사실 알림, 실외활동 중지 및 실내 대피 • 영유아 건강상태 확인 • 중대경보 발령 시 임시휴원 등 적극적 위험회피 조치

2. 실내공기질

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관련 내용
● 연면적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20. 4. 3. 시행)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10. 5월 배포)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및 보장내용

1. 보장내용

2021년 1월 기준

영유아 (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대인배상	•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영유아 상해	•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기본)	•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음식물 배상책임	• 어린이집 내에서 제조(조리)되어 공급된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는 손해를 보상
	형사소송 지원금	•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한도액(1사고당 500만원) 내에서 보상

영유아돌연사 증후군(특약)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제3자 치료비 특약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대위권 포기 특약)	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이해당사자와 어린이집이 함께 배상책임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위권 청구를 포기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활동 및 보육외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놀이시설 배상책임	어린이집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스사고 배상책임	어린이집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어린이집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승강기 이용자를 포함)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화재	공제에 가입한 물건(공제의 목적)이 화재(벼락 포함)로 인하여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 ※ 단, 공제기간 중 보상한 금액은 보상한도에서 제외함 (연간 보상한도액 적용)
화재배상 책임특약	어린이집 및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단, 공제기간 중 보상한 금액은 보상한도에서 제외함 (연간 보상한도액 적용)
풍수해특약	공제에 가입한 물건(공제의 목적)에 대해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 ※ 단, 공제기간 중 보상한 금액은 보상한도에서 제외함 (연간 보상한도액 적용)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	공제에 가입한 물건(공제의 목적)에 대해 화재, 풍수해로 약관에서 정한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10%를 위로금으로 보상 ※ 단, 공제기간 중 보상한 금액은 보상한도에서 제외함 (연간 보상한도액 적용)

※ 위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공제규정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csia.or.kr) 및 공제약관 참조

안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소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과정

- **교육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내용** : 어린이집안전사고의 이해, 실내외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 안전사고 대처법등
- **교육방식** : 강의식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안전관리담당자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내용** : 안전사고 통계분석, 관련법령 및 정책,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방안, 가정연계등
- **교육방식** : 강의 및 토의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안전교육과정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영아담당교사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그림책을 활용한 안전교육 활동안작성법, 실행 및 평가 등
- **교육방식** : 강의 및 실습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석면관리 매뉴얼.

_____(2016). 비상대피 훈련 시나리오(어린이집용).

_____(2020).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

_____(2020). 보육통계.

_____(2021). 보육사업안내.

_____(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_____(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_____(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_____(2019). 세이프그램(safegram) 부모교육 자료.

_____(2019). 어린이집 안전가이드북.

_____(2019).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4권).

_____(2020). 우리집 생활·놀이 공간 안전한 가(家)? 부모교육 자료.

_____(2020). 2019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2017). 영유아 건강관리 가이드북 개발 : 유치원 · 어린이집용.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cdc.go.kr).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행정안전부(2012).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훈련 기본지침.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과정

발행인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 사 장
편집인	김기석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기획/총괄	김심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국 장
	이미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조사연구팀	팀 장
	장미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조사연구팀	주 임
(가나다순)			
감수진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 수
	김광자	롯데호텔어린이집	원 장
	김옥심	꿈동산어린이집	원 장
	김은숙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 터 장
	위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 무 관

발행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발행일 : 2021년 3월 (초판)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7층
전화 1600-0611 / 팩스 1600-0617
www.csia.or.kr
디자인·인쇄 :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ISBN : 979-11-85610-58-0

※ 본책자의 판권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본 출판물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